

2008년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09.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원	이승진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 서 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화라는 도화선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금융과 경제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는 등 어두운 침체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한 판단력과 건실한 관행을 가지고 미래의 경쟁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변화된 자본시장의 규제환경을 반영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향후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2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종전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대신에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강화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의 틀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감독당국이나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양적 성

장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규정들을 정비하고 감독관행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고, 금융투자업계는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자기 판단,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이승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주혜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김 형 태

# 목 차

<b>I. 자본시장</b> .....	<b>1</b>
1. 주식시장 .....	1
2. 채권시장 .....	21
3. 파생상품시장 .....	22
4. 증권예탁·결제 .....	39
5. 기업공시 .....	50
<b>II. 금융투자업</b> .....	<b>55</b>
1. 증권회사 .....	55
2. 자산운용회사 .....	61
3. 선물회사 .....	67
4. 종합금융회사 .....	73
5. 신탁회사 .....	75
6. 금융투자회사 .....	77
<b>III. 감독행정</b> .....	<b>88</b>
1. 법적규제기관 .....	88
2. 자율규제기관 .....	102
<b>IV. 상장법인</b> .....	<b>105</b>

<b>V. 기업구조조정</b> .....	<b>106</b>
1. 일반기업 .....	106
2. 금융기관 .....	108
<b>VI. 기타</b> .....	<b>110</b>

##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b>I. 법령 등</b> .....	<b>117</b>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0
3. 증권거래법 .....	121
4. 증권거래법 시행령 .....	122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124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	125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	126
8. 선물거래법 .....	127
9. 선물거래법 시행령 .....	129
10. 신탁업법 .....	131
1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132
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134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35
15. 금융지주회사법 .....	136
1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137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37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9
1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139
2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9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141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	143

25.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	149
24. 상법 회사편(개정안) .....	155
<b>II. 금융위원회 규정 .....</b>	<b>161</b>
1. 금융투자업 규정 .....	161
2. 증권업 감독규정 .....	166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168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	168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171
6. 선물업 감독규정 .....	171
7.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174
8.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176
9.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177
10.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	178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179
12.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180
13. 전자금융 감독규정 .....	181
1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182
15.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183
<b>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b>	<b>184</b>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184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184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188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	19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195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197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198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198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00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1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204
12. 선물시장 업무규정 .....	205
13.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7
14.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	216
15.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217
16. 시장감시규정 .....	220
17.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221

#### **IV. 증권업협회 규정 .....** **223**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23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23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25
4. 채권 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227
5.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	227
6.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228

####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 **229**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29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31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31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32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235
6.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	236
7.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 .....	238
8. 선물거래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	238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	239

# I. 자본시장

## 1. 주식시장

### 가. 발행시장

####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호, 121조 4항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
  -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여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광고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완화
  -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나. 유통시장

#### □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4조 : 2008/7/29 제정, 2009/2/4 시행)

- 불공정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를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

□ 주권상장법인의 정의

(증권거래법 2조 13항 3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함

□ 주식등 공개매수의 대상

(증권거래법 21조 1항 : 2008/3/14 개정 · 시행)

-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확대

(증권거래법 188조 1항 : 2008/3/14 개정 ·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절차의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9조 2항, 33조 3항, 별표 3호 3 : 2008/11/27 개정 · 시행)

- 조사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긴급사태(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 급변 등)로 증선위 개최가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투자자보호·공정거래질서유지 목적상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조치시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조심)의 심의절차 면제

- 증조심은 증선위 자문기구이므로 긴급조치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와 마찬가지로 생략
-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 강화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가중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동종 불문)한 위법행위 범위를 명확히 함
-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명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의 근거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4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거나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
  - \* 차입공매도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 사인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차입한 증권의 매도

□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요건 개선 및 예고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하고,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발생된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요건을 개선
- 매매체결지연으로 매매정지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추가로 매매체결지연현상이 발생할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

기 준	개 정
①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40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된 종목 ②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 10분간 3만건(1시간동안 15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되고, - 유통가능주식수가 현저히 증가한 종목 ③ 최근 5일중 3일 이상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④ 거래소시스템 한계치 도달 종목	① 10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되고 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발생된 종목 ②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발생된 종목 ③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 이상 발생된 종목 ④ (현행과 같음)

-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시 동사실을 예고

□ 매매체결 지연시 지연현황의 공표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1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매매체결이 5분 이상 지연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안내근거를 마련

-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종목,
-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지 않더라도 매매체결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 차입공매도의 제한종목 및 제한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2 1항~3항 : 2008/9/19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의 제한종목 및 제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상종목 : 최근 20매매거래일간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5%를 초과한 종목
- 제한방법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차입공매도 제한종목에 대해 1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제한

\* 1차적으로 차입공매도가 10일간 금지된 종목이 금지기간의 마지막 날에도 대상종목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10일간 차입공매도 금지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종목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차입공매도 금지

- 규정 17조 4항 2호에 해당하는 종목

□ 매매거래실적 인정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8, 별표4 : 2008/9/19 개정, 10/1 시행)

— 거래상대방이 개인 및 일반법인인 매매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인 매매거래를 제외한 모든 매매거래로 확대

□ 위탁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도 평가대상에 추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8, 별표4 : 2008/9/19 개정, 10/1 시행)

— 위탁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을 일방의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 거래상대방 제한 미적용

□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2 4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정함

-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의 호가
- 유동성공급을 위한 호가

-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펀드, 주식선물·옵션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과정에서 매대한 주식워런트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호가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2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차입공매도 금지의 예외사유에서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삭제

□ LP 매수호가 제출의무 면제 근거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4 1항, 31조의5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LP 지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익일부터 LP의 매수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LP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매수호가 제출의무를 재부과

□ LP호가 면제시 거래소 통보의무 부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9 3항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LP 지분율이 2%를 초과하여 LP의 매수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

□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7항, 32조~34조, 36조 1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규모요건 중 기준시가총액요건 도입

- 자기자본요건의 대체요건으로 기준시가총액요건을 도입
  - \* 신규상장기업 200억원, 시장이전(코스닥 → 유가)기업 300억원

— 경영성과요건 중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등 도입

- 기존 성과요건(이익액 등)의 대체요건으로 “기준시가총액 및 매출액” 또는 “기준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요건을 도입
  - \* 기준시가총액 및 매출액: 1,000억원 & 500억원
  - \* 기준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 500억원 & 700억원 & 20억원

□ 시장진입요건 완화 및 상장신청시기 자율성 제고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6조, 32조 1항 4호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주식분산요건 완화

- 소액주주 지분율 및 신규상장 전 의무공모 비율을 5%p 완화
  - \* 소액주주 지분율: 30% 이상 → 25% 이상
  - \* 의무공모비율: 10% 이상 → 5% 이상, 증권거래법상 최저공모금액 (10억원) 이상
  - \* 대형법인(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경우 분산요건 현행 유지(10%)

—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기간 연장

-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지 후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경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근거 마련
  - \* 승인통지 후 6월 → 불가피한 경우 6월 연장 가능

□ 상장법인 관리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 50조~51조, 95조 3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DR-외국주권간 전환에 따른 시장관리 개선

- 신규상장 DR수량 한도 내에서는 DR-원주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가-변경상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으로 규제 완화

— 매매거래정지기간의 합리적 정비

- 회생절차개시신청법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종결 결정시까지”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단축. 다만,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
- 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 중 채무상태,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법인의 경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당해 시점에서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95조 2항 : 2009/2/4 시행)

□ 퇴출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80조의2~3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관리종목지정 사유 정비

- 영업활동정지 사유를 관리종목지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 상장시가총액 기준이 우리시장 규모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30일 연속 25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퇴출요건의 합리적 개선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기준 등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도입
  -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근거 마련
  - \* 상장폐지기준 해당내역 통지,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 등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 수익증권 발행관련 제출서류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14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세칙의 “간투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허가서 사본”을 “간투법에 의한 신탁약관 제정, 변경 등의 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

- 간투법상 수익증권 발행관련 내용(동법 29조, 31조) 반영

□ 청구서의 중복 및 불필요한 작성 항목 삭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청구서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계정명세 내용 중 매출채권 등의 중요 계정과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제
- 공모가격 결정방법, 해외진출국의 정치·경제 상황 등 작성에 어려움이 크고 심사상 유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 비용 부담부 서류 등 제출서류 일부 삭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청구서, 4조, 5조 : 2/11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청구서 부속서류중 감사인의 확인서한(Comfort letter)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는 상장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
-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상장주선인 선임 계약서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삭제

□ 계좌간 대체결제 가능여부 확인 서류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4조 : 2/11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주식의 계좌간 대체결제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권 상장 신청시에 제출받는 “예탁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를 “예탁자계좌부 기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문구 정리
  - 구주매출에 의한 상장, 재상장 등 주권교부후 상장의 경우 예탁자계좌 부기재확인서외에 예탁사실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주권교체에 따른 국내 매매가능 주식수 변동 신고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2조의2 : 2008/2/20 개정, 2/25 시행)

- 국내외 주권동시 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의 주권교체신청에 의해 국내 매매가능 주식수량 변동시 거래소에 신고 요구

□ ETF 수익증권의 신규 상장신청서류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4조 2항 8호 : 2008/2/20 개정, 2/25 시행)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ETF) 수익증권에 불필요한 “명의 개서대행회사 확인서류” 제출 근거 폐지

□ “업종 및 코드분류표”상의 분류업종 및 코드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 별표1 : 2008/3/10 개정, 2008/3/24 시행)

- 표준산업분류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업종 및 코드 세분화

기 준	개 정
대분류 20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194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 주식분포상황표, 신주상장신청서, 변경상장신청서 양식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18호·19호·22호 : 2008/3/10 개정, 3/17 시행)
  - 상장심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식분포상황표 및 상장신청서, 변경상장신청서의 양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사항 추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의2 1항 9호~11호 : 2008/4/28 개정, 2008/5/6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유동성공급자의 시스템 장애로 유동성공급이 중단되거나 장애해소로 유동성공급이 재개된 경우
    - 적격외국증권시장의 주가지수(니케이225 및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당해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재개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DR 전환청구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서 추가상장수수료 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3의2호 : 2008/4/28 개정, 4/29 시행)
  - 외국주식 소유자의 외국주식예탁증서 전환청구에 따른 추가상장 신청관련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 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조건 변경 근거를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 : 2008/4/28 개정, 2008/5/6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따른 신주상장 관련 확인서 양식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33호~37호 서식 : 2008/4/28 개정, 4/29 시행)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절차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7조 : 2008/9/26 개정, 2009/2/4 시행)
  - 감사의견, 주가, 시가총액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대상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이의신청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등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신청법인 등의 기준시가총액 산정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08/9/26 개정, 10/1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신청법인의 경우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근 90일간의 시장가격평균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
  - 국내외 동시공모법인의 경우 국내외 공모가 중 낮은 가격에 상장 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
  - 기타 다양한 상장형태를 감안하여 상기외의 경우에 대한 기준시가총액은 거래소가 결정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시장관리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7조, 31조의2, 34조 : 2008/9/26 개정, 10/1 시행)
  - 원주의 DR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DR 수량이 신규상장 DR수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상장신청 근거 마련

- 국내외 주권상장법인의 국내주권/외국주권간 교체 또는 DR 상장법인의 DR/원주간 전환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신고

구 분	기 준	개 선
주권동시 상장법인	국내주권/외국주권간 교체 시마다 즉시 신고	익월 5일까지 신고
DR상장법인	DR→원주전환에 대하여 익 월말 신고	DR↔원주간 전환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신고

- 단, 교체/전환수량이 상장주식(DR)수의 1%에 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상장폐지 이의신청 대상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7조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
  - 회사경영, 재무상태 전반에 관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결정
  -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로 자본잠식된 경우에 한함

□ 이의신청제도의 한시적 운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부칙사항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2011/4/30)까지 이의신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 관리종목에 대한 주기적 단일가매매 도입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3조 1항 : 2008/9/12 개정, 2009/4/1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속적 경쟁매매 →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 관리종목에 대한 불건전수요 완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가 기대됨

□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 근거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4항 : 2008/9/30 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거나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입공매도호가를 제한

□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5항~7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한 증권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10일간 공매도 제한
  - 정규시장 기준으로 차입공매도 비중이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거래일부터 10거래일간 공매도 불허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하여 정하는 종목의 공매도 제한
  - 제한기간은 거래소가 공매도 제한 종목을 선정할 때마다 설정

□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의 예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8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 장중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은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 적용 배제

□ 제한종목 및 제한기간을 공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10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거래소가 차입한 증권이 공매도 제한 종목을 정하는 경우에 종목 및 제한기간을 공표

□ 대량매매를 통한 차입공매도 금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8항 : 2008/11/28 개정, 12/1시행)

- 차입공매도 규제시 거래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량매매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차입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대량매매를 통한 차입공매도를 불허함

□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38조 1항~2항, 40조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 \* 현행 상장폐지 설정기준이 낮아 퇴출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
  -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강화
    - \*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횡수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추가로 15점 이상 별점을 받는 경우와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제 후 3년 이내에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 \* 관리종목 지정이후 고의·중과실에 대한 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 신설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 등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 진입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6조 1항, 7조 1항, 7조의2 3항 : 2008/10/1 시행)

- 규모요건 개선: 시가총액요건 신설
  -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요건(90억원)을 도입하여 현행 자기자본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 시가총액 : 공모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 경영성과 요건 개선: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신설
  - \* 시가총액(300억원) 및 매출액(100억원, 벤처 50억원) 요건을 도입하여 현행 ROE 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분산요건 완화 (6조 1항~2항, 7조의2 1항 : 2008/10/1 시행)

-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비율을 완화하여 기업의 분산부담을 경감
  - \* 소액주주 지분율: 30% → 25%
  - \* 의무공모비율: 20% 또는 10% → 10% 또는 5%

— 우회상장요건 강화 (19조 1항, 19조의2·3)

-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요건 및 규모요건을 신설

이익요건	규모요건
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 신규상장 제출서류 간소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2조, 14조, 17조 : 2008/3/5 개정, 3/10 시행)

- 신규상장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상장기업의 심사청구 부담을 경감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외함

□ 국내 및 외국기업 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서식 31·33 : 2008/3/5 개정, 3/10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2007/12)에 따른 국내 및 외국기업 예비심사청구서 서식을 정비

□ 계속보유확약서 서식의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8조 1항 5호, 상장서식 32·33 : 2008/3/5 개정, 3/10 시행)

-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용 보호예수확약서 표준양식을 신설함

□ 매각제한위반 횟수에 따른 추가 패널티 부과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2조 1항 1호 : 2008/3/5 개정, 3/10 시행)

- 종래 최초 예약매매시에만 부과되던 제재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예약매매 발생시 매회 마다 보호예수기간의 연장 근거를 명시
  - 위반횟수 마다 추가로 1년을 가산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관련 조치시기 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항 11호, 8항 : 2008/5/7 개정, 5/9 시행)

- 주주총회 시기(토·일에 개최되는 경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조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제고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경우 관리종목 해제시기 : 사유해소일의 익일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감사보고서 정정 신고시 정정제출기한에 관계없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를 지정

□ 진입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 19조의2~3 : 2008/9/29 개정, 2009/2/4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 등의 상장시 시가총액 산정기준 마련(2조 4항 : 2008/10/1 시행)
  - 규모요건 중 시가총액요건의 도입에 따라 외국예탁증서 상장시 시가총액 산정기준을 명시

외국거래소 기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 × 90일간 외국거래소 시세평균
외국거래소 비상장법인	상장예정 예탁증서수 × 모집·매출가격

- 우회상장요건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 신설된 이익요건(자기자본이익율 또는 당기순이익) 적용시 최근사업연도 6개월 미만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이익요건을 적용
  - 최대주주변경, 자본금변경 등 우회상장요건을 합병신고서(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이후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29조, 33조 9항~11항, 33조의 3~4 : 2008/9/29 개정, 2009/2/4 시행)

-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기준 및 심사절차 신설
  - 영업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종합적 상장폐지 대상을 명시

-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명시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화
    - 실질심사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정비, 이의신청 기업의 개선기간 부여 및 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심의 절차 등을 명시
  -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기간 정비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기간 변경(1년 → 2년)
    - 실질심사 대상법인의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기간 명시
    - 회생절차기업의 회생촉진을 위하여 매매거래재개 요건을 회생절차종결결정사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 완화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이의신청 허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4 11항~13항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
- 이의신청제도의 한시적 운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부칙사항: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 손실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2011/4/30)까지 이의신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 수탁거부 고객정보의 다른 회원에 대한 통보 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6조 5항 : 2008/9/12 개정, 9/16 시행)
- 불건전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간에 수탁거부 고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거부 고객정보가 증권회사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승적 불건전거래자가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사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차단

□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 2008/7/24 개정, 7/28 시행)

- 투자주의종목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및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지정요건 중 일부 요건을 상향 조정

	기 존	개 선
소수지점거래 집중종목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15%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1만주이상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20%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3만주이상
소수계좌거래 집중종목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15%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1만주이상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20%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3만주이상

- 증가급변종목 지정요건의 경우 거래를 수반하는 가격급변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거래량 요건을 추가
  - 장종료시 가격결정시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의 5%이상
-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호가)의 제출로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집중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시의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 요건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4 : 2008/7/24 개정, 7/28 시행)

- 중장기 주가상승에 따른 지정 및 지정예고 요건 중 “최근 20일중 주가상승일수 15일이상” 요건을 삭제

- 일시적 주가조정이 있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
- 1차 예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예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일시적 주가조정을 통하여 “예고 2일 연속”을 우회함으로써 투자 경고 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투자주의종목 지정예외 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5항 : 2008/11/13 개정, 12/1 시행)

-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2. 채권시장

□ 소액채권 전담회원 신규지정 평가요소 중 항목별 필수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의2 : 2008/5/27 개정 · 시행)

- 필수요건만 있는 평가항목을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으로 구분
- 종래의 필수요건 전부 충족 요건을 필수요건 및 선택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시 인정으로 완화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항 목	기 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지점 수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선택요건>**

항 목	기 준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채권운용인력	채권운용업무 전담 직원 3인 이상(3년 이상 경력) 유가증권 및 자금결제 전담 직원 1인 이상(1년 이상 경력)

□ **국채전문유통시장(KTS)의 거래대상종목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8조 2항 1호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장내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서 KTS시장의 통화안정증권 거래대상종목을 종래 2종목(364일물, 2년물)에서 모든 종목(11개)으로 확대함

### **3. 파생상품시장**

□ **불공정행위의 금지**

(선물거래법 31조 1항 5호의3·4 : 2008/3/14 개정, 4/15 시행)

- 허위사실 유포, 허위표시, 위계 등을 사용하는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물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자산(대상품목)의 수급상황·질병발생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고의로 거짓의 시세 또는 거짓의 사실, 그 밖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선물업자 및 위탁자의 보고의무

(선물거래법 32조 2항 : 2008/3/14 개정, 4/15 시행)

- 돈육 등을 기초로 한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조사 도모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선물거래법 33조 4호 : 2008/3/14 개정, 4/15 시행)

- 기초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관리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절차의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9조 2항, 33조 3항, 별표 3호 3 : 2008/11/27 개정·시행)

- 조사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긴급사태(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 급변 등)로 증선위 개최가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투자자보호·공정거래질서유지 목적상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조치시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조심)의 심의절차 면제
  - 증조심은 증선위 자문기구이므로 긴급조치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와 마찬가지로 생략

-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 강화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가중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동종 불문)한 위법행위 범위를 명확히 함
-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명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거래시간 및 휴장일

(선물시장 업무규정 4조~5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시간
  - 10시 15분부터 15시 15분까지
  - 최종거래일도 평일과 거래시간 동일
- 선물시장 휴장일(공휴일, 토요일, 12월 31일 등) 이외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정한 축산물도매시장(11개)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경우에도 돈육선물시장을 휴장
  - 선물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의 휴장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경우 해당 일의 거래는 돈육대표가격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선물시장 업무규정 55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공표하는 일별 '돈육대표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함
-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 거래단위 : 돈육도체중량 1,000kg
  - 거래수량단위 : 1계약

- 1계약금액 : 가격 × 거래승수
- 거래승수 : 1,000 (1계약당 약 300만원)

□ 결제월

(선물시장 업무규정 56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결제월 : 6개 결제월 (분기월중 2개와 그 밖의 월중 4개)
  - 최근 연속 6개월
- 최장거래기간 : 6개월 (돈육의 생육기간)

□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선물시장 업무규정 57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호가가격단위 : 5원
- 가격의 표시 : 1kg당 원화

□ 최종결제

(선물시장 업무규정 58조~59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
- 최종결제일
  -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T+2일)
  - 다만,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까지 돈육대표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을 변경
- 최종결제방법

-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 수수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발표되는 돈육대표가격

□ 거래의 임의적 중단

(선물시장 업무규정 75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거래중단 되는 경우 돈육선물시장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거래 재개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112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000계약
  - 다만,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초과 보유 불가

□ 10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조의2, 15조의4~6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최종결제시 수수하는 인수도적격국채는 국채종류(이표채), 상환기한(5년 6개월~12년) 및 발행잔액(1조원)을 요건으로 거래소가 선정하여 거래개시일에 공표
  - 인수도적격국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표
- 인수도적격국채에 대해 최종결제일이 이자락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산출
- 최종결제 절차 : ① 최종결제수량 신고 → ② 인수도내역 통지 → ③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 최종결제수량 신고 : 회원 ⇒ 거래소 (T일 16:15분 이내)
-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보유자는 인도 국채의 종목 및 액면금액(거래단 위의 정수배) 포함
- 인도 국채의 종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 또는 지정결제회원이 지정 가능
- 인수도내역 통지 : 거래소 ⇒ 회원 (T일 17:15분 이내)
-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T+2일 15시)
- 결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물인수도 국채의 최종결제시한을 15 시로 정함(통화, 금 → 12시)

□ 10년국채선물 거래증거금, 기준가격 등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8/2/21 개정, 2/25 시행)

- 호가제한폭 : 기준가격 ± 2.7% (45조)
- 최종약정가격 (52조)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은 단일가거래에 의함
- 거래증거금 (81조~82조, 84조)
  - 거래증거금률 : 1.8%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15만원
  - 최소증거금 : 3만원
  - 국채상품군 :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및 10년국채선물
  - 가격상관율 : 80%
- 기초자산 상당 금액 (별표17)
  - 거래소가 최종결제일에 기초자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현금결제는 거래소가 배정한 종목의 표면금리, 채권평가수익률, 이자지급 잔존일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함
- 기타제도 (38조, 별표1)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불가
  - 기초자산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최유리인도국채에 대하여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 최유리인도국채 : 인수도적격국채중 이론가격 또는 내재환매수익률 · 순배이시스를 고려하여 선정

□ 유동성관리상품에 대한 호가한도수량 축소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기 존	개 정
시장조성상품의 모든 종목	유동성관리상품의 모든 종목

— 시장조성상품 중 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1,000계약으로 조정

□ 옵션거래에 대한 최우선평가간격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3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기 존	개 정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	10호가 간격

□ 주식선물시장 개설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선물 기초주권 (7조의2, 별표2)

- 기초주권은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변동성 및 기초자산 활용도(ELW 등)등을 감안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종목으로 함

\* 국민은행, 삼성전자, 신세계, 신한지주, 우리금융,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현대차, KT, KT&G,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15개 종목)

— 거래승수 및 미결제약정 수량 조정 (7조의3~4)

- 기초주권의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 및 액면병합의 경우 거래승수 조정(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어 조정되는 승수가 거래승수의 정수배로 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조정

거래승수	미결제약정 수량
조정 전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주권의 증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조정 전 미결제약정 수량 × 당해 정수배

— 최종거래일 변경 (7조의5)

- 기초주권의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종목 지정, 상장폐지, 재상장·신규상장·자본감소 등으로 최종거래일에 매매거래정지 되는 경우 최종거래일 변경
- 기존 주식옵션 제도와 동일

— 최종거래일에 증가가 없는 경우 최종결제가격 (7조의6)

-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기준가격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34조)

-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간 3개 종목
  - \* 다만,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제외

— 호가의 입력제한 (38조 8호)

-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
  - \* 주식옵션도 동일하게 제도 변경

— 가격제한폭 및 기준가격 (43조~44조)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 15%
- 기준가격 (별표6의2)

① 거래개시일	② 거래개시일 ~최초의 거래성립일	③ 최초의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
이론가격 *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선물 조정이론가격	기세(기세가 없는 경 우 전일의 기준가격)	전일의 정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②, ③의 기준가격 조정</li> <li>*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 초주권의 종가)</li> </ul>		

- 호가한도수량 : 5,000계약 (50조)
-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51조)
  - 기준가격 5만원 미만 : 10배 → 50배 → 100배 → 200배 → 500배 → 1,000배 → 2,000배 → 잔량의 50% → 잔량
  - 기준가격 5만원 이상 : 1배 → 5배 → 10배 → 20배 → 50배 → 100배 → 200배 → 잔량의 50% → 잔량
- 정리매매종목의 거래체결 (53조 2항)
  -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는 30분 단위 단일가거래 실시
    - \* 시가단일가 : 호가접수시간~거래시간의 개시시점
    - \* 거래시간 개시 시점부터 30분단위로 단일가거래, 단일가호가의 거래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 이전 단일가거래 시간에 포함
    - \* 종가단일가 : 15시~15시 15분
- 거래의 임의적 중단 (63조)
  - 현물시장의 임시정지,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시스템장애·호가폭주  
로 현물시장의 호가접수가 중단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 임의적 중단
- 거래증거금 (81조~82조, 84조, 86조)
  - 거래증거금률 : 12%
  - 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
    - \* Min(매수 미결제약정수량, 매도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 선물스프  
레드거래증거금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 = 당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  
승수 × 3%

\* 단, 각 결제월의 거래승수가 다른 경우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②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계약당 선물거래증거금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미만	1천원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이상	1만원

-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의 옵션초과매도수량 승수배율 : 1배
-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을 최근 기준으로 조정(주식옵션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품군	기초자산	상관율(%)	
		기존	개정
통신업종군	SK텔레콤, KT	30	20
금융업종	우리금융, 신한지주,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30	30
자동차업종	현대차, 기아차	25	30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20	20
운송업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10
전기업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
철강	POSCO, 현대제철	-	10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은 별도의 상품군으로 함

— 정산가격 (93조)

- ① 당일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② 의제약정가격
- ③ 당일의 기세
- ④ 전일의 정산가격

\* 다만, 배당락 등이 있는 날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조정

$$\text{전일 정산가격} \times (\text{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div \text{전일 기초주권 증가})$$

— 미결제약정 수량 제한 (103조의2)

- 주식선물거래 미결제약정 수량을 매년 초 산출하여 공표하며, 공표일 부터 기산하여 7거래일 후부터 적용
  - \* 산출방법 : 보통주식총수 × 0.3% ÷ 거래승수(10)
  - \* 다만, 배당락, 권리락, 주식(액면)분할 및 액면병합 등으로 기초주권의 총수가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
  - \* 차익·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에서 제외

— 주식선물거래의 제한 (105조)

- 기초주권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상장폐지일부터 거래제한
-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상장폐지 예정, 기초주권의 재상장·신규상장·자본감소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시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8/4/25 개정, 5/6 시행)

- 유동성관리상품에 대해 분기 중(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시장조성계약 체결시 해당 기간을 다음 분기에 포함 (71조 4항)
  - 신규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계약 체결과 일치
- 옵션거래의 시장조성호가 제출종목 규제 완화 (70조)
  - 등가격 상하 2개에서 시장조성계약에서 체결한 종목 수 이상으로 거래소에 신고한 종목(월1회 변경 가능)으로 변경
- 시장조성호가 제출 시 직전의 약정가격 포함(최우선 호가간격이 직전의 약정가격을 포함하는 경우) 제도 개선 (73조 2항)
  - 최우선매수·매도호가와 직전의 약정가격과의 간격이 10호가간격 보다 큰 경우 직전의 약정가격 미포함 가능
- 시장조성계약 종료 시 미결제약정 일반계좌로 이관 (71조 7항)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료일에 시장조성계좌에 존재하는 미결제약정을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계좌로 이관

□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제도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2조~103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유연성 제고

- 상장폐지예고상품은 유동성관리기간이 일정기간(18개월) 경과한 종목에 대하여 상품성을 판단하여 상장폐지예고상품 선정
  - \* 거래규모, 동종·유사상품의 상장여부, 재상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 유동성부진상품에 대한 지속적 유동성 관리

-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되지 않는 상품이 유동성관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성관리상품으로 계속 지정

□ 주식옵션거래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옵션 기초주권 확대 (별표2)

- 투자자 편의를 위해 주식선물의 기초주권 중 주식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종목을 추가함
  - \* 신세계, LG디스플레이, 우리금융지주 추가

— 증거금률 등 변경 (47조~48조, 83조~84조)

- 주식선물시장 도입에 따라 주식옵션 거래와의 편의를 위해 증거금률 등 조정

	주식옵션		주식선물
	기존	개정	
거래증거금률	10%	12%	12%
호가한도가격(가격제한폭)	15%	18%	15%
기준가격적용이론가격	5%	6%	-

□ 최종거래일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조의2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 휴장에 따라 돈육선물시장을 휴장하는 경우 최종거래일을 다음 거래일로 변경
  - 다만, 동 사유에 의한 휴장일이 6일 이상 연속(다른 사유에 의한 휴장일 제외)되는 경우에는 6일째 되는 날로 변경
- 최종거래일에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전일로 변경

□ 최종결제일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조의3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 익일에 최종결제가격(돈육대표가격)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돈육대표가격 발표일 익일로 최종결제일 변경

□ 최종결제가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조의4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장기간 휴장하는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결제가격 변경
  -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의 6일 이상 휴장으로 6일째 되는 날로 최종거래일을 변경 한 경우 : 최종거래일 이후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의 거래가 중단되어 돈육선물시장이 중단된 후 거래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 최종거래일에 성립된 돈육선물거래의 약정가격(의제약정가격 제외)의 거래량가중평균약정가격

□ 호가의 종류 및 호가한도가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45조 : 2008/7/8 개정, 8/21 시행)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정가호가만 허용

— 호가한도가격은 기준가격의  $\pm 21\%$

□ 기준가격 및 정산가격 등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3조, 52조, 93조, 별표1 : 2008/7/8 개정, 8/21 시행)

— 기준가격

- 거래개시일 : 직전 거래일의 돈육대표가격
- 거래개시일 익일~최초 거래성립일 : 직전 거래일의 돈육대표가격
-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 : 전일의 정산가격

— 기초자산기준가격 : 돈육대표가격

— 정산가격

-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의제약정가격
- 전일의 정산가격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 : 단일가거래

□ 거래증거금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조, 84조, 87조의2 : 2008/7/8 개정, 8/21 시행)

— 거래증거금률 : 14%

— 계약당선물거래증거금(최소증거금) : 1만원

—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 : 10만원

— 최종결제가격확정전거래증거금

□ 위탁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30조~31조, 33조, 4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위탁증거금률 : 2.7%
- 유지위탁증거금률 : 1.8%
- 스프레드위탁증거금 : 25만원
- 유지스프레드위탁증거금 : 15만원
- 최소위탁증거금 : 3만원

□ 최종결제방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최종결제수량 통보 : 위탁자 ⇒ 회원 (장종료 이전)
- 거래소 배정내역 통보 : 회원 ⇒ 위탁자 (배정내역 수령시)
-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T+2일 15시)

□ 주식선물 위탁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30조~31조, 40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위탁증거금률 : 18%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 및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4.5%
-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text{Min}(\text{매수 미결제약정수량}, \text{매도미결제약정수량}) \times \text{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단, 각 결제월의 거래승수가 다른 경우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②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미만: 1천원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이상: 1만원

— 유지위탁증거금률 : 12%

— 계약당선물스프레드유지위탁증거금 : 당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3%

□ 주식선물 정산가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3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① 당일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② 의제약정가격
- ③ 당일의 기세
- ④ 전일의 정산가격

\* 다만, 배당락 등이 있는 날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조정  
전일 정산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 증가)

□ 주식선물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51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위탁자별 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은 거래소가 공표하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한
- 주식선물거래 미결제약정수량을 매년초 산출하여 공표하며, 공표일 부터 기산하여 7거래일 후부터 적용
  - 산출방법 : 보통주식총수 × 0.3% ÷ 거래승수(10)
  - 다만, 배당락, 권리락, 주식(액면)분할 및 액면병합 등으로 기초주권의 총수가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
  - 차익·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에서 제외

□ 주식옵션 위탁증거금률 등 변경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40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선물시장 도입에 따라 주식옵션 거래와의 편의를 위해 증거금률 등 조정

	주식옵션		주식선물
	기 준	개 정	
위탁증거금률	15%	18%	18%
유지위탁증거금률	10%	12%	12%

□ 위탁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30조, 31조, 33조의2, 34조, 35조, 40조 : 2008/7/8 개정, 7/21 시행)

- 위탁증거금률 : 21%
- 계약당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 : 20만원
-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 : 20만원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최소증거금) : 1만원
- 유지위탁증거금률 : 14%
-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 : 10만원

□ 정산가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3조 : 2008/7/8 개정, 7/21 시행)

- ①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② 의제약정가격 → ③ 전일의 정산가격

## 4. 증권예탁·결제

### □ 10년국채인수도 참가자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42 : 2008/4/29 개정, 4/30 시행)

— 선물시장의 결제회원

### □ 인수도자료의 통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43 : 2008/4/29 개정, 4/30 시행)

— 거래소는 10년국채선물의 최종거래일에 인수도참가자간 인수도수량을 배정한 후 인수도참가자별 최종결제수량 및 인수도참가자별 국채종목별 인수도차감수량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인수도참가자별 최종결제수량 : 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

### □ 인수도 방법 및 불이행의 통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44~45 : 2008/4/29 개정, 4/30 시행)

— 국채의 인도자인 인수도참가자는 인수도 시한까지 인도대상국채를 자기의 예탁계좌로 예탁하여야 함

•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국채의 처분 제한 가능

— 인수도참가자 및 거래소가 인도청구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즉시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인도해야 함

• 인수도참가자 인도청구 통지시 : 거래소 예탁계좌로 계좌대체

• 거래소의 인수도참가자로의 인도청구 통지시 : 거래소 예탁계좌에서 인수도참가자의 예탁계좌로 계좌대체

- 참가자가 인수도시한까지 인수도 불이행시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10년국채선물 인수도수수료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8/4/29 개정, 4/30 시행)

- 요율 : 최종거래수량에 대해 부과

자기거래	위탁거래
1계약당 332원	1계약당 380원

- 징수대상 : 인수도참가자
- 징수시기 : 증권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함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 인하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8/4/29 개정, 5/1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을 20% 인하함

구 분	기 준	개 정
주 식	0.2755/10,000	0.2204/10,000
채 권	0.021375/10,000	0.0171/10,000
상장지수 간접투자증권	0.2755/10,000	0.2204/10,000

- 주식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
- 채권 : 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수수료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93년 이후 계속면제

□ 인하기간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1조~2조 : 2008/4/29 개정, 5/1 시행)

- 인하기간은 2008년 5월 1일 매매분부터 7월 31일 매매분까지임
  - 다만, 수수료 징수요율 인하기간 중에 본 건의 증권회사수수료에 대하여 시장효율화위원의 수수료 변경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인하기간 이후에도 변경 수수료를 계속 적용함

□ 10년국채인수도 관련 규정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 3호, 18조 1항 1호·2항 1호, 19조 2항 2호 : 2008/4/30 개정, 5/2 시행)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에 10년국채인수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1조의2 : 2008/3/28 개정, 4/1 시행)

- “외화증권” 및 “외화” 중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것을 담보대상 유가증권 범위에 추가

□ 외화증권 및 외화의 담보 제공 방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1조의3 3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예탁결제원 명의 외화증권계좌에 외화증권을 납부하거나 외화예금계정에 외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공

□ 외화증권 및 외화 담보물의 관리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1조의4 2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담보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외화증권 및 외화는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되,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인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외화증권인 담보물 처분을 제한

□ 운용대상 담보물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1조의5 : 2008/3/28 개정, 4/1 시행)

- “외화”를 운용대상 담보물 범위에 추가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외화증권 및 외화의 계좌 등 대체·이체(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6조의2 1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역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다음의 계좌 등으로의 대체·이체 청구가 가능
  - (외화증권) 외화증권계좌 / (외화) 외화예금계정

□ 대차거래 담보대상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2 1호 : 2008/11/13 개정, 11/14 시행)

- 예금을 대차거래 담보대상에 추가

□ 예금의 담보 제공방법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3 3항 : 2008/11/13 개정, 11/14 시행)

- 차입자는 담보권자와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예금담보를 제공
  - 이 경우 예금담보에 대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승낙을 얻도록 함

□ 담보물중 외화증권 및 외화의 평가방법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2 3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 및 외화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전 영업일에 최종 고시한 환율에 따라 담보평가방법 등을 적용함

□ 담보물인 외화증권의 교환청구 근거 및 교환시기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4 1항 4호, 2항 1호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 담보의 경우 유가증권 담보의 교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채권이자 등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외화담보 운용이자의 지급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5 1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담보의 경우 현금담보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용하고 매월 운용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차입자에게 지급함

□ 외화증권담보 및 외화담보의 처분방법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8 1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담보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담보물 순으로 외국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 등을 통해 처분함
- 외화담보의 경우 예탁원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로 환전함

□ 외화증권 및 외화 중 담보대상 범위 설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의 경우 미국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을, 외화의 경우 미국달러화만을 담보대상으로 인정

□ 예금의 담보대상 범위 설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대차거래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국내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차입자 명의 정기예금”으로 한정

□ 예금담보의 관리 및 처분방법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2 4항, 9조의8 1항 2호의2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담보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예금금융기관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함
- 채무불이행시 예금담보는 해당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 분할할 수 없는 예금담보의 특성을 감안, 대이행한 금액 등으로 제한되는 담보물의 처분 범위에 대한 예외를 명시

□ 담보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 제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증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4 3항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담보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담보대상유가증권등의 담보 제공을 담보권자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증권대차거래 관련 담보비율 상향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증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3 1항, 부칙 2조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증권대차거래 불이행 발생 및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방안조치(2008/9/24)에 따라, 증권대차 관련 담보비율을 “100%이상 110%이내”에서 “100%이상 130%이내”로 상향 조정
- 개정 담보비율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 대차거래에 대해서 적용함
  -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담보비율을 적용

□ 수탁계약 해지사유의 구체화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18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위탁회사의 폐업·휴업·파산 또는 수수료의 장기체납 등 수탁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함

□ 수탁계약 해지 시의 유치권 행사사유 명시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19조 1항 : 2008/3/11 개정, 4/1 시행)

- 수탁계약 해지 시 수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위탁회사의 관련 장부 및 문서 등을 인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유치권의 당연한 행사이나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위해 명시

□ 수수료 감면사유 해소 시의 기본수수료 징수시기 조정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1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유(회사정리절차 개시 등)가 해소된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기본수수료를 즉시 징수하도록 함

□ 사고증권 관련 업무처리절차 정비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32조 3항 : 2008/3/11 개정, 4/1 시행)

- 사고신고된 증권에 대해 명의개서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과 사고신고인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사항 제공 시에는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가능성을 배제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3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주주 등이 자기소유주식에 관해서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예탁원이 담당하도록 함
  -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당해 청구를 위탁회사로 이송하여 위탁회사가 직접 처리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절차 규정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3조의3 : 2008/3/11 개정, 4/1 시행)

- 소수주주가 법원의 판결을 얻은 경우 직접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하여, 소수주주권의 보호를 도모함
  -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소수주주로 하여금 예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수수료 발생을 방지
  
- 인감관리 업무개선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1조 1항 9호, 10조 1항, 38조~40조, 80조 등 : 2008/3/11 개정, 4/1 시행)
  - 인감표를 대신하여 인감을 직접 등록하도록 하고, 인감의 전자적 관리근거를 규정에 명시함
  
- 가산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의2 : 2008/4/1 개정·시행)
  - 가산료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질권자 단독의 질권 말소 청구시 첨부서류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2호 다목 : 2008/4/1 개정·시행)
  - 민사 유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질권자 단독의 질권말소청구시 상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함
  
- 인감등록제도 개선사항 반영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의2 2항, 12조 : 2008/4/1 개정·시행)

- 주주의 대행업무 청구시 인감표 제출 대신 인감을 등록하도록 하고, 증권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간 필요시 인감표 대신 인감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일정 협의시 징구서류 규정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13조의2 : 2008/4/1 개정·시행)

- 주주총회 증빙서류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문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징구하도록 함

□ 전환청구로 인한 주식발행시 발행원인 증빙서류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16조 3호 가목 : 2008/4/1 개정·시행)

-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시 증권예탁결제원 소정의 전환청구서 또는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징구하도록 함

□ 배당소득 감면대상 주식의 배정규정 삭제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 : 2008/4/1 개정·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규정이 적용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관련규정 삭제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31조 : 2008/4/1 개정·시행)

-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행업무가 동 규정의 대상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

□ 결제대용증 발행시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한 매도대금 상당액 징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 11조 2항, 4항 : 2007/12/27 개정, 2008/1/21 시행)

- 결제대금이 납부 포지션인 매도 결제참가자가 결제대용증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대금 상당액을 징수함
  - 차감 후 대금결제 포지션이 '수령'인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하여는 매도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유예하고, '납부'인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하여는 매도대금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함

□ 대용필요액의 통지·관리에 관한 관련사항 삭제

(선물거래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2조 1항 4호, 5조 2호, 14조, 15조, 24조 : 2008/3/28 개정, 4/1 시행)

- 거래소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대용필요액 통지가 중단(예정)됨에 따라 대용필요액의 정의·통지 및 관리, 대용필요액에 따른 인출제한 등 관련사항을 삭제
  - \* 대용필요액 : 선물거래의 증거금필요액에서 예탁되어 있는 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거래소 또는 회원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한 금액

□ 대용증권의 인출 및 처분에 관한 거래소의 사전 확인

(선물거래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25조 2항, 26조 2항, 28조 2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의 인출을 청구하거나 거래소 또는 회원이 대용증권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

□ 등록말소에 관한 위임근거의 마련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 2008/3/3 개정·시행)

- KSD명의 등록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수령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 처리를 위한 등록말소업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의 효율성을 제고

## 5. 기업공시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 채무증권 : 7일
  - 지분증권 : 15일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10일
  - 기타 증권 : 15일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
-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규정

□ 외국법인등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특례 인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의4 2항, 5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30일)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 120일 이내

-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제출 및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 관련 사항의 기재 면제를 허용

□ 과징금 제도 운영의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2호 4 : 2008/11/27 개정·시행)

- 공시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공시위반 행위를 한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 1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2단계 상향 조정
  - 2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1단계 상향 조정
- 과징금 산정시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완화
  - 중과실이면서 공시위반행위 전력이 없고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1단계 하향 조정

□ 공정공시 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 2항, 43조, 47조 2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벌점상향)
  - 공정공시 도입(2002/11)이후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경과를 감안하여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벌점)를 일반공시 수준으로 강화

	기 준	개 선
공정공시 위반시 제재	일반공시에 비하여 완화 (일반공시 : 6~10점, 공정공시 : 3~5점)	일반공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일반공시·공정공시 : 6~10점)

- 공정공시에 대한 공시유보 적용예외 폐지

- 공정공시 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시와 마찬가지로 공정공시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선

기 존	개 선
공정공시는 공시유보에서 제외 • 거래소의 공시유보 절차 없음	공정공시도 공시유보 적용 •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공시유보 적용

— 예측·전망 관련 공정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 실적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정에 대한 구체적 예측근거의 명시 의무화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관련 제도정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9조, 31조 1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시불이행 관련 사항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공시불이행 제재 신설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등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공시불이행 제재 폐지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자사주 취득 미달시 공시변경 제재 개선

- 주가상승으로 자사주 취득수량이 신고수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총 취득금액이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변경의 예외 인정

□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의 제출의무 폐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3조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 제출의무 폐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결정시 공시의무화

□ 중립적 의결권 행사관련 공시의무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4조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용 공시시 중립적 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에 대하여 관련 근거법의 취지를 반영, 공시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횡령·배임 관련 공시 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38조 6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횡령·배임 공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화
-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에 대한 공시의무기준 강화
  - 임원의 경우는 횡령·배임금액에 관계없이 공시
  - 과거 일정기간 횡령·배임등 행위자에 대한 공시책임자 취임금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지정절차 등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3조, 33조의3, 44조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제재기준 용어변경
  -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횡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 단위)로 변경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 누계벌점이 10점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부과로 재발방지 노력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개선

- 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정지일과 신주배정 권리확정일이 겹치는 현상 방지

□ 공정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조, 33조 8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에 대한 공시유보 적용예외 폐지
  - 관계법규 위반 등 공시내용이 여과없이 공시되는 문제 해결
- 공정공시(자율공시 포함)에 대한 제재감면 폐지
  - 공정공시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의 2분의1 적용 폐지

□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 개선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7조 1항 8호·13호, 45조 2항 2호 : 2008/6/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하게 정비
  -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 요건을 2년간 6회 이상으로 완화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즉시 지정해제 가능
  - 투자유의사항 공시도 불성실공시 2년간 4회 이상으로 완화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41조 3항 4호 : 2008/6/20 개정·시행)

- 지정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예외로 인정

## II. 금융투자업

### 1. 증권회사

#### 가. 영업·상품규제

##### □ 수탁거부 고객정보의 다른 회원에 대한 통보 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6조 5항 : 2008/9/12 개정, 9/16 시행)

- 불건전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간에 수탁거부 고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거부 고객정보가 증권회사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 불건전거래자가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사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차단

##### □ 투자일임 관련 규정 개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6조 3항 : 2008/6/20 개정, 7/1 시행)

- 투자일임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을 허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36조의2 4항 5호) 개정 사항 반영

##### □ 주식선물제도의 도입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6조 3항 : 2008/6/20 개정, 7/1 시행)

- 주식선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분석 자료의 정의, 조사분석담당자의 매매제한 및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를 하여야 할 범위에 주식선물을 추가

- 거래소의 「선물시장 업무규정」(21의2~21의7) 개정 사항 반영

□ 조사분석의 일반원칙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3조 : 2008/12/11 개정, 12/16 시행)

- 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가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

□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6 8조·19조 : 2008/10/16 개정, 10/20 시행)

-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 요건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
-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의 우선적용 명시

□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약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8 2조 17호·5조 10항·9조 7항·12조·13조 : 2008/10/16 개정, 10/20 시행)

-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산정방법 변경
  - 종래 증권회사가 산정토록 하고 있던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방식을 당사자간 합의하는 방법으로 변경
- 매입유가증권 발행자가 지급불능 등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 매수자의 선택권 확대
  - 매입유가증권 발행인이 파산선고 등 실질적 지급불능상태에 처하는 경우, 매입유가증권 교체 외에 매수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가치를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0”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 삭제

- 종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매입유가증권 및 증거금유가증권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환매일 조기 도래시 정산금 산정방법 등 개선

- 정산금 지급기한을 조기도래한 환매일의 익영업일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 산정을 통보받은 날의 익영업일로 연장
- 시장가치를 통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가를 통한 정산금 산정시에도 거래 예상비용을 가산·공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가증권 교부의무 불이행시 미교부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현금증거금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과세제도 변경 등의 경우 환매일 변경 근거 신설

- 과세제도 변경 등으로 당초 약정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 일방에게 심히 부당한 경우 환매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재무건전성규제

### □ 증권회사의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47조 4항~6항 : 2008/6/16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감원장이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월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구체적 사항은 금감원장에 위임
  - \* 리스크 평가시스템 : 월별로 증권회사가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증권회사별·영업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전산시스템

□ 증권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의2, 별표16 : 2008/6/30 개정, 7/3 시행)

— 증권회사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을 10등급으로 평가

구 분	등 급
리스크 규모	매우낮음(1~2등급), 낮음(3~4등급), 보통(5~6등급), 높음(7~8등급), 매우높음(9~10등급)
리스크 관리수준	우수(1~2등급), 양호(3~4등급), 보통(5~6등급), 취약(7~8등급), 위협(9~10등급)

— 리스크 규모는 36개 계량지표를 통해 4개 리스크 유형,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리스크 유형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 영업분야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주식), 자기매매업(채권), 자기매매업(기타 유가증권),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인수 등), 투자은행업(ABS 등), 투자은행업(PI 등), 자산관리업(일임업 등), 자산관리업(CMA 등), 종합금융업

— 리스크 관리수준은 123개 비계량지표를 통해 4개 분야,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분야 :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조직·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 다.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36조의5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금지행위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의3 6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 대주주를 위한 어음 배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유형을 증권회사의 대주주에게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의3 8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증권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증권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의3 10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 금액 산정기준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61조 6항~8항 : 2008/2/27 개정·시행)

— 금감위 보고 및 공시사항을 추가로 지정

- 유가증권(주식, 채권 및 기업어음) 취득의 경우 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지분율, 분기말 현재시가
-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주요 특별약정내용

—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마련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유가증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0조의2 : 2008/2/27 개정·시행)

— 금감위 승인대상인 주요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금감위 승인대상 주요주주란 증권회사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경영전략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9)

□ 대주주 요건의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3, 별표3의3 : 2008/3/20 시행)

- 증권회사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 주요주주의 심사대상을 내국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로 확대 적용
-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대주주 신규허가의 심사대상을 개선함

	기 준	개 정
PEF	PEF와 PEF의 사실상 지배자	PEF의 무한책임사원, 30% 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당해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SPC	SPC와 SPC의 사실상 지배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당해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 PEF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심사요건에서 자기자본 4배 이상 기준과 출자금의 비차입 기준을 제외

- 증권회사의 증권자회사 신설 허용
  - 대주주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도 증권업 신규 허가를 통한 자회사 신설을 허용함

## 2. 자산운용회사

### 가. 진입규제

□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정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85조, 86조 2항, 94조, 별지 15호~18호 : 2008/2/27 개정·시행)

- 간투법 시행령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외국인 최대 주주에 대한 요건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요건 등을 폐지함에 따라,
  -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 서식에 반영함

## 나. 영업·상품규제

### □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58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등에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을 허용
  -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둘 이상의 판매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금지

### □ 신탁약관 등의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49조 1항 : 2008/2/27 개정·시행)

-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의 투자목적에서 명시한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정함

### □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절차·서식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73조의2 : 2008/2/27 개정·시행)

-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함

\* 펀드의 기준가격 : 펀드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거래 단위당(좌수) 실질 자산가치(NAV)

□ 투자자 분류기준 세분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2항 : 2008/5/14 개정, 6/23 시행)

— 자산운용회사 등이 운용하는 펀드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분류코드를 입력

기 준	개 정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3000	-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의 자산운용회사, 공모 투자회사 : 3000 -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의 자산운용회사, 사모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3100

다. 재무건전성규제

□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시 수익자총회 의무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38조, 47조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거나 환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 간접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연기금투자폴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운용시 최소 운용한도의 적용 배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22조 2항 : 2008/1/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연기금투자폴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새로 설정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이미 운용하고 있는 다른 단기금

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운용한도(법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 5,000억원)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부가 연기금투자플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하는 등, 연기금투자플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33조 2항 : 2008/1/8 개정 · 시행)

—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출시 해외자산의 최종시가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사전에 정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장 종료 이후 국내 기준가 산출시점 사이에 해외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임원결격사유 강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조 3호, 5호~7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금지행위 구체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23조 2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 대주주를 위한 어음 배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유형을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에게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23조 4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자산운용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26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10조 5호 : 2008/1/8 개정 · 시행)

-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간접투자기구(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임원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임직원의 겸직 ·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내투자자의 해외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단일거래 금액” 적용기준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14조의2 : 2008/2/27 개정 · 시행)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단일거래 금액의 적용기준을 마련함
  - 단일거래 금액은 신용공여 약정상의 약정금액으로 하되, 동일인과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함
  - 분기별로 신용공여 금액 · 내용 · 조건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용어의 정비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5조의3, 14조의3, 22조 등 : 2008/2/27 개정 ·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최대주주 변경, 대주주의 1%이상 주식소유 변동보고 시기, 서식 등을 정함
- 자산운용회사의 편익 등 제공 제한의 대상에 “취득권유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
- “주요출자자” · “지배주주” 용어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등 간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대주주가 PEF 등인 경우 대주주요건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8호·8-2호 : 2008/3/20 시행)
  -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동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등에 대해 재무건전성, 법규위반여부 등의 대주주요건을 적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식 신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5조 1항·3항, 별지 3호·3-2호 : 2008/2/27 개정·시행)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정기보고서에 신용공여의 수시·분기 보고서식을 포함하고, 신용공여사실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함
  
-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서식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4조의2, 별지 18-2호 : 2008/2/27 개정·시행)
  -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한 보고 서식을 마련

### 3. 선물회사

#### 가. 영업·상품규제

-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기준의 마련  
(선물거래법 시행령 8조의2 1항 : 2008/4/30 개정·시행)

- 일반상품이나 일반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에게 부여된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
  - 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경우 : 10건
  - 기타 선물거래의 경우 : 그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 보고사항 및 보고시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8조의2 2항~3항 : 2008/4/30 개정·시행)

- 미결제약정을 대량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 및 종목
  - 해당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등
- 선물업자와 위탁자는 해당 선물을 보유 혹은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변동 내용의 보고 전날까지 새로 변동된 사항도 포함하여 보고

□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

(선물업 감독규정 71조의3 1항 : 2008/7/3 개정·시행)

- 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을 300계약(계약금액 약 10억원) 이상으로 규정

□ 변동보고 기준수량

(선물업 감독규정 71조의3 2항 : 2008/7/3 개정·시행)

- 주식 대량보유 보고와 동일하게, 변동보고 기준수량은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의 1/5 수준으로 산정
  - 금선물 : 2계약 (10계약의 1/5)
  - 돈육선물 : 60계약 (300계약의 1/5)

□ 보고사항 및 방법

(선물업 감독규정 71조의3 3항~7항 : 2008/7/3 개정·시행)

- 선물거래법 시행령(8조의2 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 구분 등 대량보유자(위탁자의 경우 해당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 변동 내용 보고시 변동된 시점, 가격,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 수량 등
- 보고방법
  -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장애 등의 경우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허용
  - 변동내용 보고시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나.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임원결격사유 강화

(선물거래법 39조의3 5호~8호 : 2008/3/28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4 4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선물업자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선물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을 소유·취득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선물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4 6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5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선물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9~10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자격을 배제
- 선물업자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추가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37조 : 2008/2/27 개정·시행)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감위에 위임된 추가보고·공시사항을 지정함
  - 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 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지분율, 분기말 현재시가
  -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주요 특별약정내용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와의 거래 중 이사회 결의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의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함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8 : 2008/2/27 개정·시행)

- 금감위 승인대상인 주요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물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금감위 승인대상 주요주주란 선물회사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경영전략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대주주 요건의 개선

(선물업 감독규정 별표1, 별표1의2 등 : 2008/3/20 시행)

- 선물회사의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 대주주 변경시 주요주주 심사대상을 내국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로 확대 적용
-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 선물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대주주 신규허가의 심사대상을 개선함

	기 준	개 정
PEF	PEF와 PEF의 사실상 지배자	당해 PEF를 제외한 PEF의 무한책임사원, 30%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당해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SPC	SPC와 SPC의 사실상 지배자	당해 SPC를 제외한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당해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 PEF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심사요건에서 자기자본 4배 이상 기준과 출자금의 비차입 기준을 제외

- 증권회사의 증권자회사 신설 허용
  - 대주주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도 증권업 신규 허가를 통한 자회사 신설을 허용함

## 4. 종합금융회사

### □ 임원결격사유 강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조의4 3호, 5호~7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 종합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2조 1항 3호의2 : 2008/3/14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5조의2 : 2008/3/14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3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종합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을 배제
- 종합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3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5. 신탁회사

- 임원결격사유 강화  
(신탁업법 8조의2 4호, 6호~8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신탁업법 27조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별점 기준 개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2008/9/23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일반공시와 동일하게 강화
  - 3~5점 → 6~10점
- 공정공시 위반의 내용도 공시시한을 기준으로 상세화

유형	위반내용	
	기 준	개 선
공시 불이행	• 공시사항의 미공시	( 좌동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부터 1주일 경과이후 공시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부터 1주일 이내 공시
공시 반복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미공시	( 좌동 )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시한 이내 공시
공시 변경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 좌동 )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 6. 금융투자회사

### 가. 진입규제

#### □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0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  
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
  - 해당 업무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
  -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단위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단위도 설  
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

#### □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19조, 21조  
1항, 23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2  
로 경감
-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  
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대주주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  
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19조, 21조 1항, 23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2로 경감
-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대주주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4조, 7조, 19조, 25조~28조, 35조, 37조~39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인가·등록의 심사·검토시 심사·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정함
  - 인가·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 인가·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대주주 등에 대한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등

□ 금융투자업 세부 인가요건 마련

(금융투자업 규정 1-6조, 2-1조, 2-6조, 별표2, 별표3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종래 다소 추상적이던 물적 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등을 세분화·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증진
  - 물적시설을 전산설비,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요건 구체화
  - 사업계획을 수지전망, 경영건전성, 법령 준수, 내부통제장치 등으로 세분하고, 각 부문별 요건을 구체화
- 전문집합투자업자 출현이 용이하도록 시행령에서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업 또는 특정 신탁업 영위시 관련 전문인력 요건을 전문 금융투자업자별로 세분화하여 완화
  - 다만, 펀드판매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판매전문인력 요건(5인)을 신설
- 법령상 신설된 이해상충 방지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 이해상충 파악·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차단장치로 구분하고 그 세부요건을 구체화
- 금융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구체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상법상 이사로 간주되는 자 포함)인 주주
- 설립법상 소유한도 의무가 있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를 설립·인수하는 다음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
  - 주식소유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은행 등의 최대주주가 해당 은행 등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영업·상품규제

### □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45조, 47조~48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의 겸영을 허용
  -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 88조 : 2008/7/29 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의 취득한도를 확대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
    -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4-4조~4-5조, 4-8조, 4-10조~4-12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재권유금지 제도 정비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해 거부의를 표시하였더라도 재권유가 허용되는 예외사항을 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권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재권유를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에 추가

— 업무위탁 규율체제 정비

-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관한 사항,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
- 업무위탁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투자자 정보보호, 수탁자의 감독 당국 검사 수용, 재위탁 제한 등을 업무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 투자광고 규제

- 오인 광고, 부당 광고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광고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금융투자업협회가 투자광고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집합투자 관련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규정 2-1조, 4-59조, 4-65조, 별표19 등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추가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전거래의 기준 마련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며, 자전거래 대상 자산이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이 아닐 것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간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불허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미리 자전거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보관해야 함
-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가 새로이 허용됨에 따라 합리적 성과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마련
  -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
  -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별 최소투자 한도 설정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 성과보수 지표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친 경우에만 변경 가능
- 국내 판매가 가능한 역외펀드의 요건중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규제를 국내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
  - 펀드, 실물자산,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
-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공모펀드는 제외)에 대한 운용 제한을 폐지

## 다. 재무건전성규제

### □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19조, 21조 1항, 23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2로 경감
-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대주주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신탁업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 기타 금융투자업자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NCR)제도 전면 개편

(금융투자업 규정 3-10조~3-23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재무건전성 지표 공시를 강화

- NCR비율(%) 이외에도 “위험액차감순자본”의 공시를 의무화
-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 능력 또는 위험감내 능력 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자본규제의 단일화

- 금융투자업자(등록업자 제외)에 대해 공통된 NCR를 적용하고,
- 후순위차입금 인정기준 등을 증권회사 적용기준(최소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순재산 50% 이내)으로 통일
- 단, 펀드운용 과정에 법령 또는 약관 위배로 인한 법률위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 위험액은 존치

— 위험 산정방식의 개선

- 위험액 기본 틀을 국제기준에 맞게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으로 분류

위험액	기 존	개 선
구분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기초위험액, 신용집중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 운영위험액 산정방식을 신BIS기준에 맞게 영업별 영업이익에 위험값 12~18%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최소금액도 현행 법정자본금의 20%에서 10%로 완화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지급보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금융과 연계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험액을 산정하여 반영토록 함
- 제도개편으로 자기자본투자등 기업금융 여력이 크게 증가하여 IB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실태 평가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규정 3-25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경영실태평가 대상을 기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서 선물회사와 신탁회사로 확대하고, 평가부문도 통일하여 적용
  -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의 4가지로 구분
  - 등록대상인 투자자문회사, 투자일임회사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경영실태평가 미적용

□ 증권회사의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47조 4항~6항 : 2008/6/16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감원장이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월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구체적 사항은 금감원장에 위임
    - \* 리스크 평가시스템 : 월별로 증권회사가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증권회사별·영업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전산시스템

□ 증권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의2, 별표16 : 2008/6/30 개정, 7/3 시행)

- 증권회사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을 10등급으로 평가

구 분	등 급
리스크 규모	매우낮음(1~2등급), 낮음(3~4등급), 보통(5~6등급), 높음(7~8등급), 매우높음(9~10등급)
리스크 관리수준	우수(1~2등급), 양호(3~4등급), 보통(5~6등급), 취약(7~8등급), 위험(9~10등급)

- 리스크 규모는 36개 계량지표를 통해 4개 리스크 유형, 12개 영업분야로 평가

- 리스크 유형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 영업분야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주식), 자기매매업(채권), 자기매매업(기타 유가증권),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인수 등), 투자은행업(ABS 등), 투자은행업(PI 등), 자산관리업(일임업 등), 자산관리업(CMA 등), 종합금융업
- 리스크 관리수준은 123개 비계량지표를 통해 4개 분야,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분야 :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조직·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32조 : 2008/7/29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의 설치를 의무화

### □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51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
-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vs 집합투자업·신탁업
  - 기업금융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
-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2-29조~2-31조, 3-42조~3-43조, 4-6조~4-7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정비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절차,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계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민원·분쟁의 공정·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처리절차·보고체계·결과회신 등의 지침 마련
  -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권고 행위를 허용
-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응하여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체계적 위험 관리를 도모
  - 부서별·거래별·상품별 위험부담한도와 거래한도 등을 설정·운영하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관리하도록 의무화
  - 위험부담 한도,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내 설치)가 심의·의결하고,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투자매매업자는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교류에 대해 이해상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
  - 2개월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 등의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제공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제공된 정보의 타인 이용을 금지

—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원겸직에 대한 요건을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 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가 운용하는 SOC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 및 파견 근무는 예외적 허용

### III. 감독행정

#### 1. 법적규제기관

##### □ 임원결격사유 강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조 3호, 5호~7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한 면직 등의 요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66조 5항 3호의2, 167조 2항 9호 : 2008/3/14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67조의2 : 2008/3/14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임원결격사유 강화

(선물거래법 39조의3 5호~8호 : 2008/3/28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선물거래법 88조 : 2008/3/28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임원결격사유 강화

(신탁업법 8조의2 4호, 6호~8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신탁업법 27조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임원결격사유 강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0조 3호, 5호~6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2조의2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거래소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2조 3항 : 2008/3/14 개정 · 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강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1조 : 2008/12/26 개정 · 시행)

- 영업주(법인·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기존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였음

□ 임원결격사유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38조 4호, 6호~7호, 9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채용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금융지주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금융지주회사법 57조 1항 4호의2 : 2008/3/14 개정 · 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지주회사법 57조의2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 법률의 명칭 변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008/2/29 개정 · 시행)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으로 금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변경함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조 : 2008/2/29 개정 · 시행)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

□ 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조 : 2008/2/29 개정 · 시행)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 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
  -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 · 의결 기능의 내실화 도모

□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9조 2항 : 2008/2/29 개정 · 시행)

- 종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변경함
  -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

□ 증권회사의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구축 · 운영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47조 4항~6항 : 2008/6/16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감원장이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월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평가의 방법 · 기준 등 세부 · 구체적 사항은 금감원장에 위임
    - \* 리스크 평가시스템 : 월별로 증권회사가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증권회사별 · 영업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전산시스템

□ 증권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의2, 별표16 : 2008/6/30 개정, 7/3 시행)

— 증권회사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을 10등급으로 평가

구 분	등 급
리스크 규모	매우낮음(1~2등급), 낮음(3~4등급), 보통(5~6등급), 높음(7~8등급), 매우높음(9~10등급)
리스크 관리수준	우수(1~2등급), 양호(3~4등급), 보통(5~6등급), 취약(7~8등급), 위험(9~10등급)

— 리스크 규모는 36개 계량지표를 통해 4개 리스크 유형,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리스크 유형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 영업분야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주식), 자기매매업(채권), 자기매매업(기타 유가증권),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인수 등), 투자은행업(ABS 등), 투자은행업(PI 등), 자산관리업(일임업 등), 자산관리업(CMA 등), 종합금융업

— 리스크 관리수준은 123개 비계량지표를 통해 4개 분야,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분야 :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조직·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 업무위탁 근거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108조 1호의2~1호의5·14호의2·18호의2 : 2008/2/27 개정·시행)

— 법령에 신설된 금감위 보고·승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업무의 금감원장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주주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 수사보고, 분기별 종합보고 접수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혐의자(자산운용사, 대주주)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혐의자(대주주)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변경 보고의 접수
- 자산운용회사의 법령상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승인
-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 정비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35조, 39조~40조, 53조, 55조 : 2008/5/28 개정·시행)

—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 정비

-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고, 사문화된 조항인 “증권위원회(또는 감독원장)에 대한 증선위 조치권 위임 조항”을 삭제

— 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조항 정비

- 금융위규정의 일반적인 형식과 같이 금융위(증선위) 중심으로 먼저 규정한 다음, 별도의 감독원장 위탁 조항을 둬으로써 업무위탁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위탁사항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조치 후 사후관리,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관련 조사업무의 집행도 감독원장의 위탁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6조, 29조, 35조 등 : 2008/5/28 개정·시행)

— 감독원 소관이나 다른 규정의 소관 사항 삭제

- 감독원 소관사항 : 29조(사건 조사를 위한 검사대상기관 검사), 4장2절(감독원 내부의 사건 심사·조정절차)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소관사항 : 35조(증선위 안건의 상정)

— 제보인, 민원인을 “관계자”와 구별

기 준	개 정
관계자(피조사자 및 제보인등 포함)	관계자(피조사자)와 “제보인등”(불공정거래 등 제보인 및 민원인 포함)을 명확히 구별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요일 조정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6조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에 소집 →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월 2회 소집
- 실제 운영은 수요일에 개최하되, 증선위도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증선위와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개최

□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민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사업실적·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해산신고, 청산종결의 신고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위원회 권한 중 절차적 사항, 사실행위에 불과한 경미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변경 사실의 공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관련 이의신청기간 연장 등
- 은행의 결산일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위임

□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요일 조정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4조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에 소집 →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월 2회 소집

- 실제 운영은 수요일에 개최하되, 금융위도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금융위와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개최

□ 증선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추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증선위원장에게 위임

- 증권·파생상품 관련 금감원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등 요구, 한국거래소의 외국거래소 등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 사전승인, 거래정보 등 요구 표준양식 제정 등)

□ 감사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3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감사의 종류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4조~5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의 실시방법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감사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

- 정기감사는 매년 1월 말까지 감사계획을 수립

□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의 통지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9조~11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감사를 허용
-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감사결과의 처리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14조~15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해당 임직원은 그 조치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

□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용대상 추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의1·3 : 2008/12/31 개정·시행)

-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용대상에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을 추가

□ 과징금 산정기준의 통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의4 가·나 : 2008/12/31 개정·시행)

-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의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

- 전자금융업의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여신전문업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

□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 통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의5·6 : 2008/12/31 개정·시행)

-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 증권업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 등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가중·감면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령, 증권업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선물거래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관련 사항을 산정기준에 포함

□ 판매현장사전점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조 20호, 47조의6 : 2008/12/31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장점검(판매현장 사전점검)을 정의하고, 실시대상 범위, 실시 절차 등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

□ 발행분담금의 일괄납부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7조 : 2008/7/4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 가능

- 다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일괄납부를 금지

□ 금융영역별 2008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2008/7/4 개정 · 시행)

- 은행 · 비은행 : 총부채의 0.761988/10,000
- 증권 : 총부채의 3.029481/10,000 및 영업수익의 5.371025/10,000
- 보험 : 총부채의 1.239769/10,000 및 보험료 수입의 1.488425/10,000

□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정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조~25조, 29조의2, 32조, 35조 등 : 2008/5/28 개정 · 시행)

- 종래 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증선위 사전 심의기구인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위원장 : 증선위 상임위원)를 증선위 내 자문기구로 변경
- 안전상정 절차 및 운영
  - 회계감리 안전은 감독원이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한 후 증선위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증선위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기구 심의를 생략 가능
- 자문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분야 및 회계기준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참여자(참석 및 의견진술)로 추가함
  - 기획재정부(조세) 공무원 및 회계기준원(회계기준) 임직원

□ 위탁규정 정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75조~76조 : 2008/5/28 개정 · 시행)

- 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사항 구체화
  - 위탁범위를 벗어난 일부 위탁업무를 정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화
  - 감독원장은 위탁업무를 금융위·증선위에 사후에 정기적으로 보고
- 위탁사항에 대한 정기보고 정비
  - 기존 보고사항 이외에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 등 감독원장의 위탁사항에 대한 증선위 보고를 명문화

□ 업무지원 조항 신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77조 : 2008/5/28 개정·시행)

-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감독원의 “업무보조”가 “업무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지원 범위를 규정에 반영

□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조, 8조 등 : 2008/8/25 제정, 9/1 시행)

-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함
- 금융기관 해외진출 절차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일부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6조 6항, 7조 11항, 8조 8항 등 : 2008/8/25 제정, 9/1 시행)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신고수리 등 일부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게 위탁하고,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

## 2. 자율규제기관

□ 반복적인 위규행위로 인한 회원제재금 부과금액의 하한 폐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1 : 동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징계부터 적용 : 2008/2/19 개정, 2/25 시행)

— 회원의 경고누적 등 반복적인 위규행위로 인한 회원제재금 부과금액의 상한만 유지하고 하한을 폐지함

- 종래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경미한 위규행위 누적으로도 1억이상의 회원제재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위규행위에 비례한 징계가 곤란하였음

기 존	개 정
규정최고액의 20/100이하~10/100이상	규정최고액의 20/100이하

- 일반적인 회원제재금 부과수준과 형평을 도모

\* 과거 3년간 일반적 회원제재금 부과수준 : 9천만원 ~3천만원

□ 등록전문인력 변경 사항의 협회 보고 방법 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7조 : 2008/3/5 개정, 3/10 시행)

— 등록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협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학력”, “지점 주소” 및 “호주성명 및 관계” 기재란을 삭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9호·9호의2·10호·17호 : 2008/3/5 개정, 3/10 시행)

— “최종 학력” 및 “지점 주소” 기재란을 삭제

- 전문인력등록신청서, 전문인력등록(신고)원부 및 비등록전문인력신고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성명 및 관계” 기재란을 삭제

- 금융자산관리사 신원확인서

□ 주식선물제도의 설명서 반영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8/5/6 개정 · 시행)

— 주식선물의 제도개요 추가

- 대상자산, 결제월, 최종거래일, 거래개시일, 거래단위, 거래시간, 결제 등

— 주식선물의 손익계산 사례 예시 추가

- 매매체결일 당일의 일일정산
- 매매체결일 이후의 일일정산
- 최종거래일의 최종결제차금

□ 약관의 적용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1조 1항 4호 : 2008/5/6 개정 ·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선물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약관 적용범위에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추가

□ 수탁거부 사유 추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5조 1항 9호 : 2008/5/6 개정 ·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4조에서 금지하는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수탁거부사유에 추가

□ 수익률 보고대상 국고채권에 대한 단서 추가

(채권 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7조 2항 1호 : 2008/5/15 개정, 5/26 시행)

- 국고채권(3년, 5년, 10년, 2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일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 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 예비지정제도 신설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10조의2 : 2008/6/20 개정 · 시행)

-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지정제도를 도입
- 세부사항
  - 한국테크노파크협회의 추천을 예비지정요건으로 함
    - \* 한국테크노파크협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
  - 신청회사는 한국테크노파크협회를 통하여 협회에 예비지정 신청
  - 예비지정법인이 2년 이내에 프리보드에 진입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지원에 부적합한 경우 예비지정 해제

□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14조 3호, 15조 : 2008/6/20 개정 · 시행)

- 테크노파크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 IV. 상장법인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일원화

(증권거래법 197조 : 2008/3/21 개정 · 시행)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준용함

## V. 기업구조조정

### 1. 일반기업

#### □ 기업인수·합병 관련제도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9조, 153조 3항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

#### □ 국가안보 위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5조 1항 2호 : 2008/5/23 시행)

- 기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는 28종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이외에, 투자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가함
  - 외국인이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사전 방지

□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 및 외국인투자자의 사전확인 요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5조 5항~6항 : 2008/5/23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법적인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 심의의 전제가 되는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 및 외국인투자자의 사전확인 요청의 기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없음
  - 투자 신고 이전에 해당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당해 외국인투자자 검토 요청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허용

□ 국가안보위해 결정·통보 및 공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5조 7항~8항 : 2008/5/23 시행)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규제의 결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국가안보위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기밀을 제외한 결정 내용과 사유 등을 공표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당사자의 법적상태를 조기에 확정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을 완화

□ 국가안보위해 결정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5조 9항 : 2008/5/23 시행)

- 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안보위해로 결정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미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위해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를 국가안보위해로 결정하거나 조건부로 허용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 해당 외국인은 취득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법인 또는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없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1조 : 2008/6/25 개정, 7/1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지정 이후 지정제외 자산기준도 1조 4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규율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축소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

□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 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 2008/6/25개정, 7/1 시행)

-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여 기업의 행정 관련 비용을 줄임

## 2. 금융기관

□ 정부보유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시한 폐지

(금융지주회사법 6조 : 2008/3/28 개정·시행)

- 종전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던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함
- 금융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3조 : 2008/12/3 개정 · 시행)

- 일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목적회사를,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각각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

## VI. 기타

### □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

-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금융중심지 지정의 신청 및 절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8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후 관보에 고시

#### —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
  - 대학·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인 위촉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그 밖에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관 중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은행 외화예금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 2항 1호 : 2008/11/26 개정·시행)

- 은행의 원화예금 및 다른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 보험사고 발생 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

- 2008/11/3일부터 적용되며, 2009/6/30일까지 효력보유

□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통지방법 개선

(전자금융 감독규정 11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변경시, 변경내용을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
  - 다만,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관한 유효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보완

□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 한도 차등화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표1 : 2008/4/1 시행)

- 인터넷·텔레뱅킹 이용시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거래한도를 차등화
  -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기존(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는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
  -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 유지

□ 유가증권 차입거래의 목적제한 폐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II.3 : 2008/7/31 개정 · 시행)

- 종래 은행은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유가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목적제한을 삭제
  - 고객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입증이 은행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의 목적제한 폐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II.16 : 2008/7/31  
개정 · 시행)

- 종래 은행은 법인가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목적 제한을 삭제
  - 다만, 「유가증권 대차거래 모범기준」 제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방안은 마련할 예정



##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 I. 법령 등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도 개선

(2조 2호, 121조 4항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
  -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여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광고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완화
  -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

(15조, 20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
  - 해당 업무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
  -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단위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

□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

(16조 3항, 19조, 21조 1항, 23조, 별표1, 별표3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2로 경감
-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대주주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

(28조~32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의 설치를 의무화

□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

(43조, 45조, 47조~48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의 겸영을 허용

-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

□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 (50조 ~51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
  -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vs 집합투자업·신탁업
  - 기업금융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
-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86조, 88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의 취득한도를 확대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
    -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기업인수·합병 관련제도의 개선

(149조, 153조 3항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

□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 (194조 : 2008/7/29제정, 2009/2/4 시행)

- 불공정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를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2조~4조, 7조, 19조, 25조~28조, 35조, 37조~39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인가·등록의 심사·검토시 심사·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정함
  - 인가·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 인가·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대주주 등에 대한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등

□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 기간

(6조 1항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신탁업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 기타 금융투자업자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 (12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 채무증권 : 7일
  - 지분증권 : 15일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10일
  - 기타 증권 : 15일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
-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규정

### 3. 증권거래법

□ 주권상장법인의 정의 (2조 13항 3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함

□ 주식등 공개매수의 대상 (21조 1항 : 2008/3/14 개정 · 시행)

-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확대

(188조 1항 : 2008/3/14 개정 ·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일원화

(197조 : 2008/3/21 개정 · 시행)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준용함

## 4. 증권거래법 시행령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구체화

(36조의5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금지행위 구체화

(37조의3 6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 대주주를 위한 어음 배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유형을 증권회사의 대주주에게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37조의3 8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증권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증권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37조의3 10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외국법인등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특례 인정

(83조의4 2항, 5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30일)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 120일 이내

-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제출 및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 관련 사항의 기재 면제를 허용

##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 임원결격사유 강화 (8조 3호, 5호~7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한 면직 등의 요구

(166조 5항 3호의2, 167조 2항 9호 : 2008/3/14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67조의2 : 2008/3/14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금지행위 구체화

(23조 2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 대주주를 위한 어음 배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유형을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에게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23조 4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자산운용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26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시 수익자총회 의무화

(38조, 47조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거나 환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 간접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58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등에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을 허용
  -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둘 이상의 판매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금지

##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10조 5호 : 2008/1/8 개정 · 시행)

-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간접투자기구(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임원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임직원의 겸직·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내투자자의 해외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연기금투자플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운용시 최소 운용한도의 적용 배제 (22조 2항 : 2008/1/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연기금투자플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새로 설정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이미 운용하고 있는 다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운용한도(법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 5,000억원)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부가 연기금투자플 관련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하는 등, 연기금투자플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

(33조 2항 : 2008/1/8 개정·시행)

—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출시 해외자산의 최종시가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사전에 정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장 종료 이후 국내 기준가 산출시점 사이에 해외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 8. 선물거래법

□ 불공정행위의 금지 (31조 1항 5호의3·4 : 2008/3/14 개정, 4/15 시행)

- 허위사실 유포, 허위표시, 위계 등을 사용하는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물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자산(대상품목)의 수급상황·질병발생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고의로 거짓의 시세 또는 거짓의 사실, 그 밖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선물업자 및 위탁자의 보고의무

(32조 2항 : 2008/3/14 개정, 4/15 시행)

- 돈육 등을 기초로 한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조사 도모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33조 4호 : 2008/3/14 개정, 4/15 시행)

- 기초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관리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임원결격사유 강화 (39조의3 5호~8호 : 2008/3/28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88조 : 2008/3/28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9. 선물거래법 시행령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10조의4 4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선물업자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선물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을 소유·취득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선물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10조의4 6항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10조의5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선물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

(10조의9~10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자격을 배제
- 선물업자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기준의 마련

(8조의2 1항 : 2008/4/30 개정·시행)

- 일반상품이나 일반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에게 부여된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

- 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경우 : 10건
- 기타 선물거래의 경우 : 그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 보고사항 및 보고시한

(8조의2 2항~3항 : 2008/4/30 개정·시행)

- 미결제약정을 대량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 및 종목
  - 해당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등
- 선물업자와 위탁자는 해당 선물을 보유 혹은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변동 내용의 보고 전달까지 새로 변동된 사항도 포함하여 보고

## 10. 신탁업법

□ 임원결격사유 강화 (8조의2 4호, 6호~8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27조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1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임원결격사유 강화 (3조의4 3호, 5호~7호 : 2008/3/14 개정 · 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종합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22조 1항 3호의2 : 2008/3/14 개정 · 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25조의2 : 2008/3/14 개정 · 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

(5조의2~3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종합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을 배제
- 종합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 (10조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에서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함
  -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 해당 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단,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

□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

(10조의2 : 2008/1/18 개정, 1/20 시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주주가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10조의3 : 2008/1/18 개정, 1/2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
  -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임원결격사유 강화 (10조 3호, 5호~6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거래소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12조 3항 : 2008/3/14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2조의2 : 2008/3/14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담

##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강화  
(41조 : 2008/12/26 개정·시행)
  - 영업주(법인·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기존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였음

## 15. 금융지주회사법

### □ 임원결격사유 강화 (38조 4호, 6호~7호, 9호 : 2008/3/14 개정·시행)

-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동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 □ 금융지주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57조 1항 4호의2 : 2008/3/14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57조의2 : 2008/3/14 개정·시행)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보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 □ 정부보유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시한 폐지

(6조 : 2008/3/28 개정·시행)

- 종전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던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함
- 금융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1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 완화  
(3조 : 2008/12/3 개정 · 시행)
  - 일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목적회사를,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각각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의 명칭 변경 (2008/2/29 개정 · 시행)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으로 금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변경함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3조 : 2008/2/29 개정 · 시행)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

□ 금융위원회의 구성 (4조 : 2008/2/29 개정 · 시행)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

-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의 내실화 도모

□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

(29조 2항 : 2008/2/29 개정 · 시행)

— 종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변경함

-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

##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령의 명칭 변경 (2008/2/29 개정·시행)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으로 금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 변경 (2008/2/29 개정·시행)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 1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 은행 외화예금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3조 2항 1호 : 2008/11/26 개정·시행)

— 은행의 원화예금 및 다른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 보험사고 발생 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
- 2008/11/3일부터 적용되며, 2009/6/30일까지 효력보유

## 2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 (3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

-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금융중심지 지정의 신청 및 절차

(4조~8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후 관보에 고시
-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

(10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
- 대학·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인 위촉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14조 : 2008/3/21 제정, 3/22 시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그 밖에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관 중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국가안보 위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5조 1항 2호 : 2008/2/22 개정, 5/23 시행)

- 기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는 28종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이외에, 투자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가함
  - 외국인이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사전 방지

□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 및 외국인투자자의 사전확인 요청

(5조 5항~6항 : 2008/2/22 개정, 5/23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법적인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 심의의 전제가 되는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 및 외국인투자자의 사전확인 요청의 기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없음
  - 투자 신고 이전에 해당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당해 외국인투자자가 검토 요청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허용

□ 국가안보위해 결정·통보 및 공표

(5조 7항~8항 : 2008/2/22 개정, 5/23 시행)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규제의 결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국가안보위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기밀을 제외한 결정 내용과 사유 등을 공표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당사자의 법적상태를 조기에 확정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을 완화

□ 국가안보위해 결정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5조 9항 : 2008/2/22 개정, 5/23 시행)

- 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안보위해로 결정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미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위해 상태를 빠르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를 국가안보위해로 결정하거나 조건부로 허용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 해당 외국인은 취득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법인 또는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없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함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

(17조, 21조 : 2008/6/25개정, 7/1 시행)

- 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지정 이후 지정제외 자산기준도 1조 4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규율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축소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

### □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 조정 (18조 : 2008/6/25개정, 7/1 시행)

-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여 기업의 행정 관련 비용을 줄임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안 16조 : 2008/8/19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

(안 87조 : 2008/8/19 입법예고)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한정
  - 집합투자업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의결권 공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안 107조 : 2008/8/19 입법예고)

- 신탁업자가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야 하는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와 자기자본 규제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신탁업자의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규정

(안 160조 : 2008/8/19 입법예고)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반기·분기보고서를 예외적으로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증가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 사항 규정

(안 165조의2~165조의19 : 2008/8/19 입법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으로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지배구조특례 사항”은 「상법」에 이관하여 반영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

(안 165조의5 : 2008/8/19 입법예고)

-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법인 또는 반대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

(안 174조 : 2008/8/19 입법예고)

-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도 해당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동 행위를 처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 공백을 제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

(안 234조 : 2008/8/19 입법예고)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 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
  -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안 249조의2 : 2008/8/19 입법예고)

- 금전차입 규제,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완화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한정
  - 집합투자업자가 최소한의 규제 하에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

(안 274조 : 2008/8/19 입법예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편입한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의무를 미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

□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 및 환금제도 도입

(안 434조의2~434조의4, 449조 : 2008/8/19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미납된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허용
  -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의 과오납부가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환급금·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 과징금 부과기준에 업무정지기간 반영

(안 430조 : 2008/8/19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부과기준으로 명시
  -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양벌제도의 개선 (안 448조 : 2008/8/19 입법예고)

-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만 처벌받도록 하고 당해 법인·개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 당해 법인·개인이 법인대표자나 대리인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 당해 법인·개인이 무과실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에 적합한 벌칙 적용이 가능

□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규정

(안 36조 3항 : 2008/12/26 입법예고)

-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분기별 업무보고서와는 별도로 월별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동일하게 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가능해지는 등 업무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증권신고서 면제대상 확대

(안 119조 1항 31호·2항 4호 : 2008/12/26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특수채의 범위에 추가하고,
-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
  - 증권신고서의 면제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발행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 신설

(안 130조 4항 : 2008/12/26 입법예고)

-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의 정정한도를 그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
  -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발생한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신고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기준 정비 (안 176조의2 2항 6호 카목 : 2008/12/26 입법예고)

-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처분·해지 후 3개월)이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

-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 명시

(안 176조의7 1항 : 2008/12/26 입법예고)

-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수주문을 내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사유로 명시
  -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매수청구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합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근거 명확화

(안 208조 : 2008/12/26 입법예고)

-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 공매도 및 결제이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방법과 공매도 배제 사유를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공매도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5.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안 8조의2 3항 : 2008/10/14 입법예고)

-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

-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안 2조 1항 8호, 8조 2항 4호, 8조의4~7 : 2008/10/14 입법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 산업자본이 PEF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이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30%를 넘는 경우에 해당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함
-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안 8조의8 : 2008/10/14 입법예고)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8조의2~7 : 2008/10/14 입법예고)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에서 10%로 상향조정함
  - 단, 10%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

(안 45조의5, 51조의2, 64조, 70조 등 : 2008/10/14 입법예고)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안 2조, 20~21조, 33조 등 : 2008/10/14 입법예고)

-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이 경우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 적용을 배제함
    - \* 보험지주회사 : 고객수탁자산을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 \* 금융투자지주회사 :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 완화

(안 36조 1~2항 : 2008/10/14 입법예고)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45조),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48조 1항 1호),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할 의무(48조 1항 3호·2항)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거래제한과 관련한 일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자회사 등 경우는 개별업법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

(안 23~32조 : 2008/10/14 입법예고)

### — 설립인가 및 자회사 등 편입승인 관련 규제완화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 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 자회사 편입승인시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체계로 일원화함

### —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 관련 규제완화

-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등이 다른 금융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로 지배하는 이상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수직적 출자도 허용함
- 다만, 상호 위험전이 가능성이 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간의 수직적 출자관계는 금지

##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안 34조~37조 : 2008/10/14 입법예고)

-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임점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와 회사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거래를 제한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인정

(안 22조 : 2008/10/14 입법예고)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에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 \*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 :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공동출자 등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 의무, 사업지주회사 금지 등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 개선 (2008/10/14 입법예고)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안 39조)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안 47조)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허용
  -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 부과 (안 41조의5)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사이에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준법감시인을 설치토록 의무화
  - 해당 준법감시인에 대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 개선 (안 43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폐지
  - 무분별한 자회사 출자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시행령·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허용 (안 43조2 4항)
  - 최저지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해외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회사 등이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다른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
  - 공동출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

□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

(안 18조 1항, 43조의2~3, 48조 3항, 48조의2 : 2008/10/14 입법예고)

-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그 밖의 일반지주회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는 체계로 단순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 법인인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최저지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
- 현행 개인고객의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의 공유만 가능하던 것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 공유까지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법인의 예탁유가증권 총액에 관한 정보 공유도 유가증권 종류별 총액정보의 공유로 확대

## 24. 상법 회사편(개정안)

### □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안 86조의2~86조의9, 287조의2~287조의45 : 2008/5/7 입법예고)

-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를 도입
  -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
  -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
- 사모투자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

### □ 회사설립의 편의 제고 (안 291조, 329조, 546조 : 2008/5/7 입법예고)

-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분할에 어려움이 있음
-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
  - 소규모기업 창업의 원활화 도모

### □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안 318조 3항 : 2008/5/7 입법예고)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안 344조~346조, 344조의2~344조의4 : 2008/5/7 입법예고)

-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4에서 1/2로 확대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안 356조의2, 478조 3항 : 2008/5/7 입법예고)

-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
  -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유가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도입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안 360조의24~360조의26 : 2008/5/7 입법예고)

-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안 363조 5항~8항 : 2008/5/7 입법예고)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 절약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안 368조의4 : 2008/5/7 입법예고)**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
    -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안 398조 1항 : 2008/5/7 입법예고)**
  -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도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안 398조 3항 : 2008/5/7 입법예고)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사의 책임감경 (안 400조 2항 : 2008/5/7 입법예고)**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 이사의 진취적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집행임원제도 도입 (안 408조의2~408조의9 : 2008/5/7 입법예고)

- 이사회에 감독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도입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 대내적으로는 경영 안정성 확보와 대외적으로는 거래의 안전 도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안 446조의2, 447조, 447의4, 452조~457조의2 : 2008/5/7 입법예고)

-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 해소를 통한 회계규범의 이원화 현상을 방지

□ 배당제도 개선 (안 449조의2, 462조의4 : 2008/5/7 입법예고)

- 정관으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
  - 자금운용의 통일성 및 재무관리의 자율성 향상

□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안 460조, 461조의2 : 2008/5/7 입법예고)

-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본전입과 감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도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속적인 사용이 가능

□ 사채제도의 개선

(안 469조~473조, 480조의2~480조의3, 481조~485조 : 2008/5/7 입법예고)

-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을 허용
  -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 증대
-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 사채권자의 효과적인 보호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정비

(안 542조의5~542조의6 : 2008/5/7 입법예고)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감사인선임청구권의 지분율을 낮추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명문화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의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안 542조의12 : 2008/5/7 입법예고)

-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
  -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

(안 542조의3~542조의4, 542조의7~542조의11 : 2008/5/7 입법예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상법으로 포섭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안 545조, 556조, 571조, 607조 : 2008/5/7 입법예고)

-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이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II. 금융위원회 규정

### 1. 금융투자업 규정

#### □ 금융투자업 세부 인가요건 마련

(1-6조, 2-1조, 2-6조, 별표2, 별표3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종래 다소 추상적이던 물적 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등을 세분화·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증진
  - 물적시설을 전산설비,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요건 구체화
  - 사업계획을 수지전망, 경영건전성, 법령 준수, 내부통제장치 등으로 세분하고, 각 부문별 요건을 구체화
- 전문집합투자업자 출현이 용이하도록 시행령에서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업 또는 특정 신탁업 영위시 관련 전문인력 요건을 전문 금융투자업자별로 세분화하여 완화
  - 다만, 펀드판매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판매전문인력 요건(5인)을 신설
- 법령상 신설된 이해상충 방지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 이해상충 파악·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차단장치로 구분하고 그 세부요건을 구체화
- 금융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구체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상법상 이사로 간주되는 자 포함)인 주주
- 설립법상 소유한도 의무가 있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를 설립·인수하는 다음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
  - 주식소유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은행 등의 최대주주가 해당 은행 등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NCR)제도 전면 개편

(3-10조~3-23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재무건전성 지표 공시를 강화

- NCR비율(%) 이외에도 “위험액차감순자본”의 공시를 의무화
-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 능력 또는 위험감내 능력 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자본규제의 단일화

- 금융투자업자(등록업자 제외)에 대해 공통된 NCR를 적용하고,
- 후순위차입금 인정기준 등을 증권회사 적용기준(최소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순재산 50% 이내)으로 통일
- 단, 펀드운용 과정에 법령 또는 약관 위배로 인한 법률위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 위험액은 존치

— 위험 산정방식의 개선

- 위험액 기본 틀을 국제기준에 맞게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으로 분류

위험액	기 준	개 선
구분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기초위험액, 신용집중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 운영위험액 산정방식을 신BIS기준에 맞게 영업별 영업이익에 위험값 12~18%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최소금액도 현행 법정자본금의 20%에서 10%로 완화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지급보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금융과 연계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험액을 산정하여 반영토록 함
- 제도개편으로 자기자본투자등 기업금융 여력이 크게 증가하여 IB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실태 평가제도 개선 (3-25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경영실태평가 대상을 기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서 선물회사와 신탁회사로 확대하고, 평가부문도 통일하여 적용
  -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의 4가지로 구분
  - 등록대상인 투자자문회사, 투자일임회사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경영실태평가 미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2-29조~2-31조, 3-42조~3-43조, 4-6조~4-7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정비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절차,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계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민원·분쟁의 공정·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처리절차·보고체계·결과회신 등의 지침마련
  -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권고 행위를 허용
-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응하여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체계적 위험 관리를 도모
  - 부서별·거래별·상품별 위험부담한도와 거래한도 등을 설정·운영하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관리하도록 의무화
  - 위험부담 한도,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내 설치)가 심의·의결하고,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투자매매업자는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교류에 대해 이해상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
  - 2개월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 등의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제공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제공된 정보의 타인 이용을 금지

—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원겸직에 대한 요건을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 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가 운용하는 SOC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 및 파견 근무는 예외적 허용

□ 투자자보호 강화

(44조~45조, 48조, 410조~412조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재권유금지 제도 정비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해 거부의를 표시하였더라도 재권유가 허용되는 예외사항을 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권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재권유를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에 추가

— 업무위탁 규율체제 정비

-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관한 사항,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
- 업무위탁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투자자 정보보호, 수탁자의 감독 당국 검사 수용, 재위탁 제한 등을 업무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 투자광고 규제

- 오인 광고, 부당 광고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광고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금융투자업협회가 투자광고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집합투자 관련 제도 개선

(2-1조, 4-59조, 4-65조, 별표19 등 : 2008/8/4 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추가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전거래의 기준 마련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며, 자전거래 대상 자산이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이 아닐 것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간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불허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미리 자전거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보관해야 함
-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가 새로이 허용됨에 따라 합리적 성과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마련
  -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
  -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별 최소투자 한도 설정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 성과보수 지표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친 경우에만 변경 가능
- 국내 판매가 가능한 역외펀드의 요건중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규제를 국내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
  - 펀드, 실물자산,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
-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공모펀드는 제외)에 대한 운용 제한을 폐지

## 2. 증권업 감독규정

### □ 대주주 요건의 개선 (별표3, 별표3의3 : 2008/2/27 개정, 3/20 시행)

#### — 증권회사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 주요주주의 심사대상을 내국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로 확대 적용

#### —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대주주 신규허가의 심사대상을 개선함

	기 준	개 정
PEF	PEF와 PEF의 사실상 지배자	당해 PEF를 제외한 PEF의 무한책임사원, 30%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당해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SPC	SPC와 SPC의 사실상 지배자	당해 SPC를 제외한 PEF 업무 집행사원으로 당해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 PEF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심사요건에서 자기자본 4배 이상 기준과 출자금의 비차입 기준을 제외

#### — 증권회사의 증권자회사 신설 허용

- 대주주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도 증권업 신규 허가를 통한 자회사 신설을 허용함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 금액 산정기준 마련 (2-61조 6항~8항 : 2008/2/27 개정·시행)

#### — 금감위 보고 및 공시사항을 추가로 지정

- 유가증권(주식, 채권 및 기업어음) 취득의 경우 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지분율, 분기말 현재시가

-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주요 특별약정내용

—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마련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유가증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1-10조의2 : 2008/2/27 개정·시행)

— 금감위 승인대상인 주요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금감위 승인대상 주요주주란 증권회사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경영전략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9)

□ 증권회사의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

(2-47조 4항~6항 : 2008/6/16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감원장이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월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구체적 사항은 금감원장에 위임
  - \* 리스크 평가시스템 : 월별로 증권회사가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증권회사별·영업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전산시스템

###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증권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마련 (2-14조의2, 별표16 : 2008/6/30 개정, 7/3 시행)

— 증권회사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을 10등급으로 평가

구 분	등 급
리스크 규모	매우낮음(1~2등급), 낮음(3~4등급), 보통(5~6등급), 높음(7~8등급), 매우높음(9~10등급)
리스크 관리수준	우수(1~2등급), 양호(3~4등급), 보통(5~6등급), 취약(7~8등급), 위험(9~10등급)

— 리스크 규모는 36개 계량지표를 통해 4개 리스크 유형,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리스크 유형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 영업분야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주식), 자기매매업(채권), 자기매매업(기타 유가증권),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인수 등), 투자은행업(ABS 등), 투자은행업(PI 등), 자산관리업(일임업 등), 자산관리업(CMA 등), 종합금융업

— 리스크 관리수준은 123개 비계량지표를 통해 4개 분야, 12개 영업 분야로 평가

- 분야 :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조직·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 대주주가 PEF 등인 경우 대주주요건 마련

(별지 8호·8-2호 : 2008/2/27 개정, 3/20 시행)

-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동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등에 대해 재무건전성, 법규위반여부 등의 대주주요건을 적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단일거래 금액” 적용기준 마련

(14조의2 : 2008/2/27 개정 · 시행)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단일거래 금액의 적용기준을 마련함
  - 단일거래 금액은 신용공여 약정상의 약정금액으로 하되, 동일인과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함
  - 분기별로 신용공여 금액 · 내용 · 조건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신탁약관 등의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마련

(49조 1항 : 2008/2/27 개정 · 시행)

-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의 투자목적에서 명시한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정함

□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절차 · 서식 마련

(73조의2 : 2008/2/27 개정 · 시행)

-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함
  - \* 펀드의 기준가격 : 펀드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거래단위당(좌수) 실질 자산가치(NAV)

□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정비

(85조, 86조 2항, 94조, 별지 15호~18호 : 2008/2/27 개정·시행)

— 간투법 시행령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외국인 최대주주에 대한 요건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요건 등을 폐지함에 따라,

-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 서식에 반영함

□ 업무위탁 근거 마련

(108조 1호의2~1호의5·14호의2·18호의2 : 2008/2/27 개정·시행)

— 법령에 신설된 금감위 보고·승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업무의 금감원장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주주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 수시보고, 분기별 종합보고 접수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혐의자(자산운용사, 대주주)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혐의자(대주주)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변경 보고의 접수
- 자산운용회사의 법령상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승인
-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 용어의 정비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조의3, 14조의3, 22조 등 : 2008/2/27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최대주주 변경, 대주주의 1%이상 주식소유 변동보고 시기, 서식 등을 정함
- 자산운용회사의 편익 등 제공 제한의 대상에 “취득권유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
- “주요출자자”·“지배주주” 용어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등 간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식 신설

(5조 1항·3항, 별지 3호·3-2호 : 2008/2/27 개정·시행)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정기보고서에 신용공여의 수시·분기 보고서식을 포함하고, 신용공여사실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함

###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서식 마련

(14조의2, 별지 18-2호 : 2008/2/27 개정·시행)

-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한 보고 서식을 마련

## 6. 선물업 감독규정

### 대주주 요건의 개선 (별표1, 별표1의2 등 : 2008/2/27 개정, 3/20 시행)

- 선물회사의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 대주주 변경시 주요주주 심사대상을 내국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로 확대 적용

—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 선물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대주주 신규허가의 심사대상을 개선함

	기 존	개 정
PEF	PEF와 PEF의 사실상 지배자	PEF의 무한책임사원, 30%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당해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SPC	SPC와 SPC의 사실상 지배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당해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 대주주 신규허가의 심사요건 중, PEF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 4배 이상 기준과 출자금의 비차입 기준은 적용제외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추가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마련 (37조 : 2008/2/27 개정·시행)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감위에 위임된 추가보고·공시사항을 지정함

- 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 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지분율, 분기말 현재 시가
-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주요 특별약정내용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와의 거래 중 이사회 결의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의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함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2조의18 : 2008/2/27 개정 · 시행)

- 금감위 승인대상인 주요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물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금감위 승인대상 주요주주란 선물회사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경영전략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 (71조의3 1항 : 2008/7/3 개정 · 시행)

-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을 300계약(계약금액 약 10억원) 이상으로 규정

□ 변동보고 기준수량 (71조의3 2항 : 2008/7/3 개정 · 시행)

- 주식 대량보유 보고와 동일하게, 변동보고 기준수량은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의 1/5 수준으로 산정
  - 금선물 : 2계약 (10계약의 1/5)
  - 돈육선물 : 60계약 (300계약의 1/5)

□ 보고사항 및 방법 (71조의3 3항~7항 : 2008/7/3 개정 · 시행)

- 선물거래법 시행령(8조의2 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 구분 등 대량보유자(위탁자의 경우 해당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 변동 내용 보고서 변동된 시점, 가격,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등

— 보고방법

-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장애 등의 경우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허용
- 변동내용 보고시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7.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 금융위원회 설립에 따른 명칭 및 주체 변경

(1조, 3조 등 : 2008/5/28 개정·시행)

— 명칭 변경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 주체 변경

- 조사 및 조치 주체를 법령상 권한자인 금융위(증선위)로 통일함
-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

→ 금융위(불공정거래 및 금융위 위임사항은 증선위)

### □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 정비

(35조, 39조~40조, 53조, 55조 : 2008/5/28 개정·시행)

—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 정비

-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고, 사문화된 조항인 "증선위위원장(또는 감독원장)에 대한 증선위 조치권 위임 조항"을 삭제

— 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조항 정비

- 금융위규정의 일반적인 형식과 같이 금융위(증선위) 중심으로 먼저 규정한 다음, 별도의 감독원장 위탁 조항을 덧붙여 업무위탁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위탁사항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조치 후 사후관리,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관련 조사업무의 집행도 감독원장의 위탁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16조, 29조, 35조 등 : 2008/5/28 개정·시행)

- 감독원 소관이나 다른 규정의 소관 사항 삭제
  - 감독원 소관사항 : 29조(사건 조사를 위한 검사대상기관 검사), 4장2절(감독원 내부의 사건 심사·조정절차)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소관사항 : 35조(증선위 안건의 상정)
- 제보인, 민원인을 “관계자”와 구별

기 존	개 정
관계자(피조사자 및 제보인등 포함)	관계자(피조사자)와 “제보인등”(불공정거래 등 제보인 및 민원인 포함)을 명확히 구별

□ 과징금 제도 운영의 개선 (별표 2호 4 : 2008/11/27 개정·시행)

- 공시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공시위반 행위를 한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 1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2단계 상향 조정
  - 2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1단계 상향 조정
- 과징금 산정시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완화
  - 중과실이면서 공시위반행위 전력이 없고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1단계 하향 조정

□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절차의 개선

(19조 2항, 33조 3항, 별표 3호 3 : 2008/11/27 개정·시행)

- 조사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긴급사태(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 급변 등)로 증선위 개최가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투자자보호·공정거래질서유지 목적상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조치시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조심)의 심의절차 면제
  - 증조심은 증선위 자문기구이므로 긴급조치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와 마찬가지로 생략
-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 강화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가중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동종 불문)한 위법행위 범위를 명확히 함
-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명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경 및 면제사유의 통합정비 (33조 2항 : 2008/11/27 개정·시행)

- 별도로 나뉘어 있던 감경 및 면제 조항의 통합

## 8.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요일 조정

(6조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에 소집 →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월 2회 소집
  - 실제 운영은 수요일에 개최하되, 증선위도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증선위와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개최

□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추가

(별표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민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사업실적·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해산신고, 청산종결의 신고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위원회 권한 중 절차적 사항, 사실행위에 불과한 경미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변경 사실의 공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관련 이의신청기간 연장 등
- 은행의 결산일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위임

## 9.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요일 조정

(4조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에 소집 →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월 2회 소집
  - 실제 운영은 수요일에 개최하되, 금융위도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금융위와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개최

□ 증선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추가

(별표 : 2008/12/26 개정, 2009/1/1 시행)

-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증선위원장에게 위임
  - 증권·파생상품 관련 금감원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등 요구, 한국거래소의 외국거래소 등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 사전승인, 거래정보 등 요구 표준양식 제정 등)

## 10.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 감사대상기관 (3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감사의 종류 (4조~5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의 실시방법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감사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
  - 정기감사는 매년 1월 말까지 감사계획을 수립

□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의 통지

(9조~11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감사를 허용

—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감사결과의 처리 (14조~15조 : 2008/6/16 제정, 6/17 시행)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해당 임직원은 그 조치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

##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용대상 추가

(별표2의1·3 : 2008/12/31 개정·시행)

—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용대상에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을 추가

□ 과징금 산정기준의 통일 (별표2의4 가·나 : 2008/12/31 개정·시행)

—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의 기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

— 전자금융업의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여신전문업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

□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 통일

(별표2의5·6 : 2008/12/31 개정·시행)

-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 증권업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 등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가중·감  
면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령, 증권업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선물거래  
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과징금 관련 사항을 산정기준에 포함

□ 판매현장사전점검 (3조 20호, 47조의6 : 2008/12/31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장점검(판매현장 사전점검)을 정의하고, 실시대상 범위, 실  
시 절차 등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

## 12.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발행분담금의 일괄납부 (7조 : 2008/7/4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  
가능
  - 다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일괄납부를 금지

□ 금융영역별 2008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별표2 : 2008/7/4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 : 총부채의 0.761988/10,000

- 증권 : 총부채의 3.029481/10,000 및 영업수익의 5.371025/10,000
- 보험 : 총부채의 1.239769/10,000 및 보험료 수입의 1.488425/10,000

### 13. 전자금융 감독규정

#### □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통지방법 개선

(11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변경시, 변경내용을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
  - 다만,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관한 유효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보완

#### □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 한도 차등화

(별표1 : 2007/11/28 개정, 4/1 시행)

- 인터넷·텔레뱅킹 이용시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거래한도를 차등화
  -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기존(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는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
  -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 유지

## 1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 명칭 변경

(1조, 6조~7조, 16조의2, 53조~54조, 59조 등 : 2008/5/28 개정·시행)

-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변경

### □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정비

(23조~25조, 29조의2, 32조, 35조 등 : 2008/5/28 개정·시행)

- 종래 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증선위 사전 심의기구인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위원장 : 증선위 상임위원)를 증선위 내 자문기구로 변경
- 안전상정 절차 및 운영
  - 회계감리 안전은 감독원이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한 후 증선위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증선위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기구 심의를 생략 가능
- 자문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분야 및 회계기준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참여자(참석 및 의견진술)로 추가함
  - 기획재정부(조세) 공무원 및 회계기준원(회계기준) 임직원

### □ 위탁규정 정비 (75조~76조 : 2008/5/28 개정·시행)

- 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사항 구체화
  - 위탁범위를 벗어난 일부 위탁업무를 정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화
  - 감독원장은 위탁업무를 금융위·증선위에 사후에 정기적으로 보고
- 위탁사항에 대한 정기보고 정비
  - 기존 보고사항 이외에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 등 감독원장의 위탁사항에 대한 증선위 보고를 명문화

□ 업무지원 조항 신설 (77조 : 2008/5/28 개정·시행)

-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감독원의 “업무보조”가 “업무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지원 범위를 규정에 반영

## 15.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유가증권 차입거래의 목적제한 폐지 (II.3 : 2008/7/31 개정·시행)

- 종래 은행은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유가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목적제한을 삭제
  - 고객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입증은 은행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의 목적제한 폐지

(II.16 : 2008/7/31 개정·시행)

- 종래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목적 제한을 삭제
  - 다만, 「유가증권 대차거래 모범기준」 제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방안은 마련할 예정

### Ⅲ.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의 근거 신설

(17조 4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거나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

\* 차입공매도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 사인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차입한 증권의 매도

####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매매체결 지연시 지연현황의 공표 근거 마련

(41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매매체결이 5분 이상 지연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안내근거를 마련

-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종목,
-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지 않더라도 매매체결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요건 개선 및 예고근거 마련

(33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하고,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발생된 종목

의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요건을 개선

- 매매체결지연으로 매매정지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추가로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발생할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

기 준	개 정
①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40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된 종목 ②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 10분간 3만건(1시간동안 15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되고, - 유통가능주식수가 현저히 증가한 종목 ③ 최근 5일중 3일 이상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④ 거래소시스템 한계치 도달 종목	① 10만건 이상의 호가가 접수되고 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발생된 종목 ②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 중 3일 이상 발생된 종목 ③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체결 지연 시간이 5분 이상 발생된 종목 ④ (현행과 같음)

-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시 동사실을 예고

□ 소액채권 전담회원 신규지정 평가요소 중 항목별 필수요건 개선  
(별표2의2 : 2008/5/27 개정 · 시행)

- 필수요건만 있는 평가항목을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으로 구분
- 종래의 필수요건 전부 충족 요건을 필수요건 및 선택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시 인정으로 완화

<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

항 목	기 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지점 수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선택요건>**

항 목	기 준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채권전문회원 제외) 평균의 50% 이상
채권운용인력	채권운용업무 전담 직원 3인 이상(3년 이상 경력) 유가증권 및 자금결제 전담 직원 1인 이상(1년 이상 경력)

매매거래실적 인정 범위 확대

(99조의8, 별표4 : 2008/9/19 개정, 10/1 시행)

- 거래상대방이 개인 및 일반법인인 매매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인 매매거래를 제외한 모든 매매거래로 확대

위탁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도 평가대상에 추가

(99조의8, 별표4 : 2008/9/19 개정, 10/1 시행)

- 위탁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을 일방의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 거래상대방 제한 미적용

차입공매도의 제한종목 및 제한방법

(24조의2 1항~3항 : 2008/9/19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의 제한종목 및 제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상종목 : 최근 20매매거래일간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5%를 초과한 종목
  - 제한방법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차입공매도 제한종목에 대해 1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제한
    - \* 1차적으로 차입공매도가 10일간 금지된 종목이 금지기간의 마지막 날에도 대상종목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10일간 차입공매도 금지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종목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차입공매도 금지
  - 규정 17조 4항 2호에 해당하는 종목

□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24조의2 4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정함
  -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의 호가
  - 유동성공급을 위한 호가
  -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펀드, 주식선물·옵션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과정에서 매매한 주식워런트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호가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 국채전문유통시장(KTS)의 거래대상종목 확대

(78조 2항 1호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장내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서 KTS시장의 통화안정증권 거래대상종목을 종래 2종목(364일물, 2년물)에서 모든 종목(11개)으로 확대함

□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한

(24조의2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차입공매도 금지의 예외사유에서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삭제

□ LP 매수호가 제출의무 면제 근거 신설

(31조의4 1항, 31조의5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LP 지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익일부터 LP의 매수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LP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매수호가 제출의무를 재부과

□ LP호가 면제시 거래소 통보의무 부과

(31조의9 3항 : 2008/11/29 개정, 12/1 시행)

- LP 지분율이 2%를 초과하여 LP의 매수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2조 7항, 32조~34조, 36조 1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규모요건 중 기준시가총액요건 도입
  - 자기자본요건의 대체요건으로 기준시가총액요건을 도입
    - \* 신규상장기업 200억원, 시장이전(코스닥 → 유가)기업 300억원
- 경영성과요건 중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등 도입
  - 기존 성과요건(이익액 등)의 대체요건으로 “기준시가총액 및 매출액” 또는 “기준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요건을 도입
    - \* 기준시가총액 및 매출액: 1,000억원 & 500억원
    - \* 기준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 500억원 & 700억원 & 20억원

□ 시장진입요건 완화 및 상장신청시기 자율성 제고 등

(16조, 32조 1항 4호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주식분산요건 완화

- 소액주주 지분율 및 신규상장 전 의무공모 비율을 5%p 완화
  - \* 소액주주 지분율: 30% 이상 → 25% 이상
  - \* 의무공모비율: 10% 이상 → 5% 이상, 증권거래법상 최저공모금액 (10억원) 이상
  - \* 대형법인(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경우 분산요건 현행 유지(10%)

—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기간 연장

-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지 후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경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근거 마련
  - \* 승인통지 후 6월 → 불가피한 경우 6월 연장 가능

□ 퇴출제도 개선

(75조 1항, 80조의2~3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관리종목지정 사유 정비

- 영업활동정지 사유를 관리종목지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 상장시가총액 기준이 우리시장 규모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30일 연속 25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퇴출요건의 합리적 개선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기준 등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도입
  -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근거 마련
  - \* 상장폐지기준 해당내역 통지,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 등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 상장법인 관리제도 개선

(47조, 50조~51조, 95조 3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DR-외국주권간 전환에 따른 시장관리 개선

- 신규상장 DR수량 한도 내에서는 DR-원주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가-변경상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으로 규제 완화

— 매매거래정지기간의 합리적 정비

- 회생절차개시신청법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종결 결정시까지”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단축. 다만,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
- 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 중 재무상태,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법인의 경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당해 시점에서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95조 2항 : 2009/2/4 시행)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 청구서의 중복 및 불필요한 작성 항목 삭제

(청구서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계정명세 내용 중 매출채권 등의 중요 계정과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제
- 공모가격 결정방법, 해외진출국의 정치·경제 상황 등 작성에 어려움이 크고 심사상 유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 비용 부담부 서류 등 제출서류 일부 삭제

(청구서, 4조, 5조 : 2008/1/30 개정, 2/11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청구서 부속서류중 감사인의 확인서한(Comfort letter) 및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는 상장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
-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상장주선인 선임 계약서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삭제

□ 계좌간 대체결제 가능여부 확인 서류의 범위 확대

(4조 : 2008/1/30 개정, 2/11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주식의 계좌간 대체결제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권 상장 신청시에 제출받는 “예탁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를 “예탁자계좌부 기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문구 정리
  - 구주매출에 의한 상장, 재상장 등 주권교부후 상장의 경우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외에 예탁사실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수익증권 발행관련 제출서류 변경

(14조 : 2008/1/30 개정, 2/11 시행)

- 세칙의 “간투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허가서 사본”을 “간투법에 의한 신탁약관 제정, 변경 등의 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
  - 간투법상 수익증권 발행관련 내용(동법 29조, 31조) 반영

□ 주권교체에 따른 국내 매매가능 주식수 변동 신고 근거 마련  
(32조의2 : 2008/2/20 개정, 2/25 시행)

— 국내외 주권동시 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의 주권교체신청에 의해 국내 매매가능 주식수량 변동시 거래소에 신고 요구

□ ETF 수익증권의 신규 상장신청서류 정비  
(14조 2항 8호 : 2008/2/20 개정, 2/25 시행)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ETF) 수익증권에 불필요한 “명의 개서대행회사 확인서류” 제출 근거 폐지

□ “업종 및 코드분류표”상의 분류업종 및 코드 정비  
(21조, 별표1 : 2008/3/10 개정, 3/24 시행)

— 표준산업분류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업종 및 코드 세분화

기 존	개 정
대분류 20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194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 주식분포상황표, 신주상장신청서, 변경상장신청서 양식 변경  
(별지 18호·19호·22호 : 2008/3/10 개정, 3/17 시행)

— 상장심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식분포상황표 및 상장신청서, 변경상장신청서의 양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사항 추가  
(35조의2 1항 9호~11호 : 2008/4/28 개정, 5/6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유동성공급자의 시스템 장애로 유동성공급이 중단되거나 장애해소로 유동성공급이 재개된 경우
- 적격외국증권시장의 주가지수(니케이225 및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당해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재개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DR 전환청구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서 추가상장수수료 면제

(50조 5항 3의2호 : 2008/4/28 개정, 4/29 시행)

- 외국주식 소유자의 외국주식예탁증서 전환청구에 따른 추가상장 신청관련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 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조건 변경 근거를 신설 (별표3 : 2008/4/28 개정, 2008/5/6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따른 신주상장 관련 확인서 양식 변경 (별지 33호~37호 서식 : 2008/4/28 개정, 2008/5/6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신청법인 등의 기준시가총액 산정근거 마련

(2조의2 : 2008/9/26 개정, 10/1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신청법인의 경우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근 90일간의 시장가격평균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
- 국내외 동시공모법인의 경우 국내외 공모가 중 낮은 가격에 상장 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
- 기타 다양한 상장형태를 감안하여 상기외의 경우에 대한 기준시가 총액은 거래소가 결정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시장관리 개선

(27조, 31조의2, 34조 : 2008/9/26 개정, 10/1 시행)

- 원주의 DR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DR 수량이 신규상장 DR수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상장신청 근거 마련
- 국내외 주권상장법인의 국내주권/외국주권간 교체 또는 DR 상장법인의 DR/원주간 전환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신고

구 분	기 준	개 선
주권동시 상장법인	국내주권/외국주권간 교체 시마다 즉시 신고	익월 5일까지 신고
DR상장법인	DR→원주전환에 대하여 익 월말 신고	DR↔원주간 전환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신고

- 단, 교체/전환수량이 상장주식(DR)수의 1%에 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절차 명확화

(47조 : 2008/9/26 개정, 2009/2/4 시행)

- 감사의견, 주가, 시가총액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대상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이의신청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등

□ 상장폐지 이의신청 대상 확대

(47조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에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함

- 회사경영, 재무상태 전반에 관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결정
-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로 자본잠식된 경우에 한함

□ 이의신청제도의 한시적 운영

(부칙사항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2011/4/30)까지 이의신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공정공시 제도 개선

(35조 2항, 43조, 47조 2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별점상향)
  - 공정공시 도입(2002/11)이후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경과를 감안하여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별점)를 일반공시 수준으로 강화

	기 존	개 선
공정공시 위반시 제재	일반공시에 비하여 완화 (일반공시 : 6~10점, 공정공시 : 3~5점)	일반공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일반공시·공정공시 : 6~10점)

- 공정공시에 대한 공시유보 적용예외 폐지
  - 공정공시 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시와 마찬가지로 공정공시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선

기 존	개 선
공정공시는 공시유보에서 제외 • 거래소의 공시유보 절차 없음	공정공시도 공시유보 적용 •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공시유보 적용

- 예측·전망 관련 공정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 실적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정에 대한 구체적 예측근거의 명시 의무화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관련 제도정비

(29조, 31조 1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시불이행 관련 사항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공시불이행 제재 신설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등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공시불이행 제재 폐지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자사주 취득 미달시 공시변경 제재 개선
  - 주가상승으로 자사주 취득수량이 신고수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총 취득금액이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변경의 예외 인정

□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의 제출의무 폐지

(23조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 제출의무 폐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결정시 공시의무화

□ 중립적 의결권 행사관련 공시의무 명확화

(74조 : 2008/9/12 개정, 10/1 시행)

-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용 공시시 중립적 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에 대하여 관련 근거법의 취지를 반영, 공시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별점 기준 개선

(별표 1 : 2008/9/23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일반공시와 동일하게 강화
  - 3~5점 → 6~10점
- 공정공시 위반의 내용도 공시시한을 기준으로 상세화

유형	위반내용	
	기 존	개 선
공시 불이행	• 공시사항의 미공시	( 좌동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 공시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공시 반복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미공시	( 좌동 )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공시내용 반복사실의 공시시한 이내 공시
공시 변경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 좌동 )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관리종목에 대한 주기적 단일가매매 도입 근거 마련

(23조 1항 : 2008/9/12 개정, 2009/4/1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속적 경쟁매매 →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 관리종목에 대한 불건전수요 완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가 기대됨

□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 근거 신설

(9조의2 4항 : 2008/9/30 제정, 10/1 시행)

-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거나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입공매도호가를 제한

##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투자자 분류기준 세분화 (38조 2항 : 2008/5/14 개정, 6/23 시행)

- 자산운용회사 등이 운영하는 펀드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분류코드를 입력

기 준	개 정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3000	-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의 자산운용회사, 공모 투자회사 : 3000 -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의 자산운용회사, 사모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3100

□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

(8조의3 5항~7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차입한 증권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10일간 공매도 제한
  - 정규시장 기준으로 차입공매도 비중이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거래일부터 10거래일간 공매도 불허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하여 정하는 종목의 공매도 제한
  - 제한기간은 거래소가 공매도 제한 종목을 선정할 때마다 설정

□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의 예외

(8조의3 8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 장중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은 차입증권의 공매도 제한 적용 배제

□ 제한종목 및 제한기간을 공표

(8조의3 10항 : 2008/9/30 개정, 10/1 시행)

- 거래소가 차입한 증권에 대한 공매도 제한 종목을 정하는 경우에 종목 및 제한기간을 공표

□ 대량매매를 통한 차입공매도 금지

(8조의3 8항 : 2008/11/28 개정, 12/1시행)

- 차입공매도 규제시 거래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량매매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차입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대량매매를 통한 차입공매도를 불허함

##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진입제도 개선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6조 1항, 7조 1항, 7조의2 3항 : 2008/10/1 시행)

- 규모요건 개선: 시가총액요건 신설
  -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요건(90억원)을 도입하여 현행 자기자본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 시가총액 : 공모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 경영성과 요건 개선: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신설
  - \* 시가총액(300억원) 및 매출액(100억원, 벤처 50억원) 요건을 도입하여 현행 ROE 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 분산요건 완화 (6조 1항~2항, 7조의2 1항 : 2008/10/1 시행)

- 소액주주 지분을 및 의무공모비율을 완화하여 기업의 분산부담을 경감
  - \* 소액주주 지분율: 30% → 25%
  - \* 의무공모비율: 20% 또는 10% → 10% 또는 5%

#### — 우회상장요건 강화 (19조 1항, 19조의2·3)

-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요건 및 규모요건을 신설

이익요건	규모요건
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 □ 퇴출제도 개선

(28조 1항, 38조 1항~2항, 40조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 \* 현행 상장폐지 설정기준이 낮아 퇴출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
  -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강화
    - \*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횡수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추가로 15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와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제 후 3년 이내에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 \* 관리종목 지정이후 고의·중과실에 대한 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 신설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 등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신규상장 제출서류 간소화

(12조, 14조, 17조 : 2008/3/5 개정, 3/10 시행)

- 신규상장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상장기업의 심사청구 부담을 경감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외함

### 국내 및 외국기업 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정비

(상장서식 31·33 : 2008/3/5 개정, 3/10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2007/12)에 따른 국내 및 외국기업 예비 심사청구서 서식을 정비

□ 계속보유확약서 서식의 근거 마련

(18조 1항 5호, 상장서식 32·33 : 2008/3/5 개정, 3/10 시행)

-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용 보호예수확약서 표준양식을 신설함

□ 매각제한위반 횟수에 따른 추가 패널티 부과 명시

(22조 1항 1호 : 2008/3/5 개정, 3/10 시행)

- 종래 최초 예약매매시에만 부과되던 제재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예약매매 발생시 매회 마다 보호예수기간의 연장 근거를 명시
  - 위반횟수 마다 추가로 1년을 가산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관련 조치시기 조정

(26조 1항 11호, 8항 : 2008/5/7 개정, 5/9 시행)

- 주주총회 시기(토·일에 개최되는 경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조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제고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경우 관리종목 해제시기 : 사유해소일의 익일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감사보고서 정정 신고시 정정제출기한에 관계없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를 지정

□ 진입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19조 3항, 19조의2~3 : 2008/9/29 개정, 2009/2/4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 등의 상장시 시가총액 산정기준 마련(2조 4항 : 2008/10/1 시행)

- 규모요건 중 시가총액요건의 도입에 따라 외국예탁증서 상장시 시가총액 산정기준을 명시

외국거래소 기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 × 90일간 외국거래소 시세평균
외국거래소 비상장법인	상장예정 예탁증서수 × 모집·매출가격

— 우회상장요건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 신설된 이익요건(자기자본이익을 또는 당기순이익) 적용시 최근사업연도 6개월 미만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이익요건을 적용
- 최대주주변경, 자본금변경 등 우회상장요건을 합병신고서(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이후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6조, 29조, 33조 9항~11항, 33조의3~4 : 2008/9/29 개정, 2009/2/4 시행)

—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기준 및 심사절차 신설

- 영업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종합적 상장폐지 대상을 명시
-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명시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화

- 실질심사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정비, 이의신청 기업의 개선기간 부여 및 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심의 절차 등을 명시

—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기간 정비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기간 변경(1년 → 2년)
- 실질심사 대상법인의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해제기간 명시
- 회생절차기업의 회생촉진을 위하여 매매거래재개 요건을 회생절차종결결정시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 완화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이의신청 허용  
(33조의4 11항~13항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
  
- 이의신청제도의 한시적 운영  
(부칙사항 : 2008/10/24 개정, 2009/2/4 시행)
  - 환율변동 손실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2011/4/30)까지 이의신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횡령·배임 관련 공시 강화  
(6조 1항 2호, 38조 6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횡령·배임 공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화
  -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에 대한 공시의무기준 강화
    - 임원의 경우는 횡령·배임금액에 관계없이 공시
    - 과거 일정기간 횡령·배임등 행위자에 대한 공시책임자 취임금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지정절차 등 개선  
(33조, 33조의3, 44조 :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제재기준 용어변경
    -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횡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 단위)로 변경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 누계벌점이 10점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부과로 재발방지 노력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개선
    - 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정지일과 신주배정 권리확정일이 겹치는 현상 방지
- 공정공시제도 개선 (20조, 33조 8항 : 2008/9/1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에 대한 공시유보 적용예외 폐지
    - 관계법규 위반 등 공시내용이 여과없이 공시되는 문제 해결
  - 공정공시(자율공시 포함)에 대한 제재감면 폐지
    - 공정공시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의 2분의1 적용 폐지

## 12. 선물시장 업무규정

- 거래시간 및 휴장일
- (4조~5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시간
    - 10시 15분부터 15시 15분까지
    - 최종거래일도 평일과 거래시간 동일
  - 선물시장 휴장일(공휴일, 토요일, 12월 31일 등) 이외에 축산물등급 판정소가 정한 축산물도매시장(11개)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경우에도 돈육선물시장을 휴장
    - 선물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의 휴장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경우 해당 일의 거래는 돈육대 표가격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55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공표하는 일별 '돈육대표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함
-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 거래단위 : 돈육도체중량 1,000kg
  - 거래수량단위 : 1계약
  - 1계약금액 : 가격 × 거래승수
  - 거래승수 : 1,000 (1계약당 약 300만원)

□ 결제월 (56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결제월 : 6개 결제월 (분기월중 2개와 그 밖의 월중 4개)
  - 최근 연속 6개월
- 최장거래기간 : 6개월 (돈육의 생육기간)

□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57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호가가격단위 : 5원
- 가격의 표시 : 1kg당 원화

□ 최종결제 (58조~59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
- 최종결제일
  -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T+2일)
  - 다만,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까지 돈육대표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을 변경

- 최종결제방법
  -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 수수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발표되는 돈육대표가격

□ 거래의 임의적 중단

(75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거래중단 되는 경우 돈육선물시장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거래 재개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112조 : 2008/6/27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000계약
  - 다만,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초과 보유 불가

## 13.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10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

(15조의2, 15조의4~6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최종결제시 수수하는 인수도적격국채는 국채종류(이표채), 상환기한(5년 6개월~12년) 및 발행잔액(1조원)을 요건으로 거래소가 선정하여 거래개시일에 공표
  - 인수도적격국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표
- 인수도적격국채에 대해 최종결제일이 이자락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산출

- 최종결제 절차 : ① 최종결제수량 신고 → ② 인수도내역 통지 → ③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 최종결제수량 신고 : 회원 ⇒ 거래소 (T일 16:15분 이내)
    - \*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보유자는 인도 국채의 종목 및 액면금액(거래 단위의 정수배) 포함
    - \* 인도 국채의 종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 또는 지정결제회원이 지정 가능
  - 인수도내역 통지 : 거래소 ⇒ 회원 (T일 17:15분 이내)
  -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T+2일 15시)
    - \* 결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물인수도 국채의 최종결제시한을 15시로 정함(통화, 금 → 12시)

□ 10년국채선물 거래증거금, 기준가격 등 (2008/2/21 개정, 2/25 시행)

- 호가제한폭 : 기준가격  $\pm$  2.7% (45조)
- 최종약정가격 (52조)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은 단일가거래에 의함
- 거래증거금 (81조~82조, 84조)
  - 거래증거금률 : 1.8%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15만원
  - 최소증거금 : 3만원
  - 국채상품군 :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및 10년국채선물
  - 가격상관율 : 80%
- 기초자산 상당 금액 (별표17)
  - 거래소가 최종결제일에 기초자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현금결제는 거래소가 배정한 종목의 표면금리, 채권평가수익률, 이차지급 잔존일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함
- 기타제도 (38조, 별표1)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불가

- 기초자산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최유리인도국채에 대하여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 \* 최유리인도국채 : 인수도적격국채중 이론가격 또는 내재환매수익률·순베이스스를 고려하여 선정

□ 유동성관리상품에 대한 호가한도수량 축소

(5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기 존	개 정
시장조성상품의 모든 종목	유동성관리상품의 모든 종목

- 시장조성상품 중 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1,000계약으로 조정

□ 옵션거래에 대한 최우선호가간격 변경

(73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기 존	개 정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	10호가 간격

□ 주식선물시장 개설 (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선물 기초주권 (7조의2, 별표2)

- 기초주권은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변동성 및 기초자산 활용도(ELW 등)등을 감안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종목으로 함
  - \* 국민은행, 삼성전자, 신세계, 신한지주, 우리금융,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현대차, KT, KT&G,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15개 종목)

— 거래승수 및 미결제약정 수량 조정 (7조의3~4)

- 기초주권의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 및 액면병합의 경우 거래승수 조정(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어 조정되는 승수가 거래승수의 정수배로 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조정

거래승수	미결제약정 수량
조정 전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주권의 증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조정 전 미결제약정 수량 × 당해 정수배

— 최종거래일 변경 (7조의5)

- 기초주권의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종목 지정, 상장폐지, 재상장·신규상장·자본감소 등으로 최종거래일에 매매거래정지 되는 경우 최종거래일 변경
- 기존 주식옵션 제도와 동일

— 최종거래일에 증가가 없는 경우 최종결제가격 (7조의6)

-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기준가격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34조)

-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간 3개 종목
  - \* 다만,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제외

— 호가의 입력제한 (38조 8호)

-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
  - \* 주식옵션도 동일하게 제도 변경

— 가격제한폭 및 기준가격 (43조~44조)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 15%
- 기준가격 (별표6의2)

① 거래개시일	② 거래개시일 ~최초의 거래성립일	③ 최초의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
이론가격 *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선물 조정이론가격	기세(기세가 없는 경 우 전일의 기준가격)	전일의 정산가격
*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②, ③의 기준가격 조정 *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 초주권의 종가)		

- 호가한도수량 : 5,000계약 (50조)
-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51조)
  - 기준가격 5만원 미만 : 10배 → 50배 → 100배 → 200배 → 500배 → 1,000배 → 2,000배 → 잔량의 50% → 잔량
  - 기준가격 5만원 이상 : 1배 → 5배 → 10배 → 20배 → 50배 → 100배 → 200배 → 잔량의 50% → 잔량
- 정리매매종목의 거래체결 (53조 2항)
  -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는 30분 단위 단일가거래 실시
    - \* 시가단일가 : 호가접수시간~거래시간의 개시시점
    - \* 거래시간 개시 시점부터 30분단위로 단일가거래, 단일가호가의 거래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 이전 단일가거래 시간에 포함
    - \* 종가단일가 : 15시~15시 15분
- 거래의 임의적 중단 (63조)
  - 현물시장의 임시정지,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시스템장애·호가폭주  
로 현물시장의 호가접수가 중단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 임의적 중단
- 거래증거금 (81조~82조, 84조, 86조)
  - 거래증거금률 : 12%
  - 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
    - \*  $\text{Min}(\text{매수 미결제약정수량, 매도미결제약정수량}) \times \text{계약당 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 = 당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  
승수 × 3%

\* 단, 각 결제월의 거래승수가 다른 경우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②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거래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계약당 선물거래증거금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미만	1천원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이상	1만원

-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의 옵션초과매도수량 승수배율 : 1배
-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을 최근 기준으로 조정(주식옵션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품군	기 초 자 산	상관율 (%)	
		기 존	개 정
통신업종군	SK텔레콤, KT	30	20
금융업종	우리금융, 신한지주,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30	30
자동차업종	현대차, 기아차	25	30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20	20
운송업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10
전기업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
철강	POSCO, 현대제철	-	10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은 별도의 상품군으로 함

— 정산가격 (93조)

- ① 당일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② 의제약정가격
- ③ 당일의 기세

④ 전일의 정산가격

- \* 다만, 배당락 등이 있는 날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조정  

$$\text{전일 정산가격} \times (\text{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div \text{전일 기초주권 종가})$$

— 미결제약정 수량 제한 (103조의2)

- 주식선물거래 미결제약정 수량을 매년 초 산출하여 공표하며, 공표일 부터 기산하여 7거래일 후부터 적용
  - \* 산출방법 : 보통주식총수 × 0.3% ÷ 거래승수(10)
  - \* 다만, 배당락, 권리락, 주식(액면)분할 및 액면병합 등으로 기초주권의 총수가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
  - \* 차익·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에서 제외
- 주식선물거래의 제한 (105조)
- 기초주권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상장폐지일부터 거래제한
-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상장폐지 예정, 기초주권의 재상장·신규상장·자본감소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시 새로운 결제일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식옵션거래 (2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옵션 기초주권 확대 (별표2)

- 투자자 편의를 위해 주식선물의 기초주권 중 주식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종목을 추가함
  - \* 신세계, LG디스플레이, 우리금융지주 추가

— 증거금률 등 변경 (47조~48조, 83조~84조)

- 주식선물시장 도입에 따라 주식옵션 거래와의 편의를 위해 증거금률 등 조정

	주식옵션		주식선물
	기존	개정	
거래증거금률	10%	12%	12%
호가한도가격(가격제한폭)	15%	18%	15%
기준가격적용이론가격	5%	6%	-

□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2008/4/25 개정, 5/6 시행)

- 유동성관리상품에 대해 분기 중(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시장 조성계약 체결시 해당 기간을 다음 분기에 포함 (71조 4항)
  - 신규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계약 체결과 일치
- 옵션거래의 시장조성호가 제출종목 규제 완화 (70조)
  - 등가격 상하 2개에서 시장조성계약에서 체결한 종목 수 이상으로 거래소에 신고한 종목(월1회 변경 가능)으로 변경
- 시장조성호가 제출 시 직전의 약정가격 포함(최우선 호가간격이 직전의 약정가격을 포함하는 경우) 제도 개선 (73조 2항)
  - 최우선매수·매도호가와 직전의 약정가격과의 간격이 10호가간격 보다 큰 경우 직전의 약정가격 미포함 가능
- 시장조성계약 종료 시 미결제약정 일반계좌로 이관 (71조 7항)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료일에 시장조성계좌에 존재하는 미결제약정을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계좌로 이관

□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제도 개선

(102조~103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유연성 제고
  - 상장폐지예고상품은 유동성관리기간이 일정기간(18개월) 경과한 종목에 대하여 상품성을 판단하여 상장폐지예고상품 선정
    - \* 거래규모, 동종·유사상품의 상장여부, 재상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 유동성부진상품에 대한 지속적 유동성 관리
  -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되지 않는 상품이 유동성관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성관리상품으로 계속 지정

□ 최종거래일 변경 (20조의2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 휴장에 따라 돈육선물시장을 휴장하는 경우 최종거래일을 다음 거래일로 변경

- 다만, 동 사유에 의한 휴장일이 6일 이상 연속(다른 사유에 의한 휴장일 제외)되는 경우에는 6일째 되는 날로 변경

— 최종거래일에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전일로 변경

□ 최종결제일 변경 (20조의3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 익일에 최종결제가격(돈육대표가격)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돈육대표가격 발표일 익일로 최종결제일 변경

□ 최종결제가격 (20조의4 : 2008/7/8 개정, 8/21 시행)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장기간 휴장하는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결제가격 변경

-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의 6일 이상 휴장으로 6일째 되는 날로 최종거래일을 변경 한 경우 : 최종거래일 이후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의 거래가 중단되어 돈육선물시장이 중단된 후 거래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 최종거래일에 성립된 돈육선물거래의 약정가격(의제약정가격 제외)의 거래량가중평균약정가격

□ 호가의 종류 및 호가한도가격

(38조, 45조 : 2008/7/8 개정, 8/21 시행)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정가호가만 허용
- 호가한도가격은 기준가격의  $\pm 21\%$

□ 기준가격 및 정산가격 등

(43조, 52조, 93조, 별표1 : 2008/7/8 개정, 8/21 시행)

— 기준가격

- 거래개시일 : 직전 거래일의 돈육대표가격
- 거래개시일 익일~최초 거래성립일 : 직전 거래일의 돈육대표가격
-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 : 전일의 정산가격

- 기초자산기준가격 : 돈육대표가격
- 정산가격
  -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의제약정가격
  - 전일의 정산가격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 : 단일가거래

□ 거래증거금 (81조, 84조, 87조의2 : 2008/7/8 개정, 8/21 시행)

- 거래증거금률 : 14%
- 계약당선물거래증거금(최소증거금) : 1만원
-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 : 10만원
- 최종결제가격확정전거래증거금

□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주식회사KB금융지주로 변경

(별표2, 별표16 : 2008/10/9 개정, 10/13 시행)

-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회사국민은행이 주식이전으로 주식회사KB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신규상장(2008/10/10)됨에 따라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을 주식회사KB금융지주로 변경
  -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의 다음 거래일(2008/10/13)에 주식선물 및 주식 옵션 각 4개 결제월 상장 및 거래 개시

## 14.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 돈육선물 거래승수

(19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돈육선물 거래승수 : 1,000

□ 최종결제방법 (36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 수수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 다만, 축산물도매시장이 장기간(6일) 휴장하는 경우, 최종거래일에 축산물도매시장 과반수가 거래중단 되는 경우에는 세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함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45조 : 2008/6/27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000계약
  - 다만, 최근 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초과 보유 불가

## 15.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위탁증거금

(24조, 30조~31조, 33조, 4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위탁증거금률 : 2.7%
- 유지위탁증거금률 : 1.8%
- 스프레드위탁증거금 : 25만원
- 유지스프레드위탁증거금 : 15만원
- 최소위탁증거금 : 3만원

□ 최종결제방법 (40조 : 2008/2/21 개정, 2/25 시행)

- 최종결제수량 통보 : 위탁자 ⇒ 회원 (장종료 이전)

- 거래소 배정내역 통보 : 회원 ⇒ 위탁자 (배정내역 수령시)
- 국채와 최종결제대금 수수 (T+2일 15시)

□ 주식선물 위탁증거금

(24조, 30조~31조, 40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위탁증거금률 : 18%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 및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4.5%
-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text{Min}(\text{매수 미결제약정수량}, \text{매도미결제약정수량}) \times \text{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단, 각 결제월의 거래승수가 다른 경우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②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각 결제월별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미만: 1천원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10만원 이상: 1만원
- 유지위탁증거금률 : 12%
- 계약당선물스프레드유지위탁증거금 : 당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3%

□ 주식선물 정산가격 (43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① 당일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② 의제약정가격

③ 당일의 기세

④ 전일의 정산가격

\* 다만, 배당락 등이 있는 날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조정

전일 정산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 증가)

□ 주식선물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51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위탁자별 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은 거래소가 공표하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한

— 주식선물거래 미결제약정수량을 매년초 산출하여 공표하며, 공표일 부터 기산하여 7거래일 후부터 적용

- 산출방법 : 보통주식총수 × 0.3% ÷ 거래승수(10)
- 다만, 배당락, 권리락, 주식(액면)분할 및 액면병합 등으로 기초주권의 총수가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
- 차익·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에서 제외

□ 주식옵션 위탁증거금률 등 변경

(24조, 40조 : 2008/4/25 개정, 5/6 시행)

— 주식선물시장 도입에 따라 주식옵션 거래와의 편의를 위해 증거금률 등 조정

	주식옵션		주식선물
	기 존	개 정	
위탁증거금률	15%	18%	18%
유지위탁증거금률	10%	12%	12%

□ 위탁증거금

(24조, 30조, 31조, 33조의2, 34조, 35조, 40조 : 2008/7/8 개정, 7/21 시행)

- 위탁증거금률 : 21%
- 계약당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 : 20만원
-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 : 20만원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최소증거금) : 1만원
- 유지위탁증거금률 : 14%
-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 : 10만원

□ 정산가격 (43조 : 2008/7/8 개정, 7/21 시행)

- ①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② 의제약정가격 → ③ 전일의 정산가격

## 16. 시장감시규정

□ 수탁거부 고객정보의 다른 회원에 대한 통보 근거 마련

(6조 5항 : 2008/9/12 개정, 9/16 시행)

- 불건전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간에 수탁거부 고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거부 고객정보가 증권회사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승적 불건전거래자가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사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차단

## 17.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반복적인 위규행위로 인한 회원제재금 부과금액의 하한 폐지

(2008/2/19 개정, 2/25 시행) (별표1 : 동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징계부터 적용)

— 회원의 경고누적 등 반복적인 위규행위로 인한 회원제재금 부과시 금액의 상한만 유지하고 하한을 폐지함

- 종래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경미한 위규행위 누적으로도 1억이상의 회원제재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위규행위에 비례한 징계가 곤란하였음

기 존	개 정
규정최고액의 20/100이하~10/100이상	규정최고액의 20/100이하

- 일반적인 회원제재금 부과수준과 형평을 도모

\* 과거 3년간 일반적 회원제재금 부과수준 : 9천만원 ~3천만원

□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3조 : 2008/7/24 개정, 7/28 시행)

— 투자주의종목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및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지정요건 중 일부 요건을 상향 조정

	기 존	개 선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15%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1만주이상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20%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3만주이상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15%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1만주이상	-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 20%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 3만주이상

— 종가급변종목 지정요건의 경우 거래를 수반하는 가격급변시 투자

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거래량 요건을 추가

- 장종료시 가격결정시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의 5%이상

-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호가)의 제출로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집중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시의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 요건 개선

(3조의3~4 : 2008/7/24 개정, 7/28 시행)

- 중장기 주가상승에 따른 지정 및 지정예고 요건 중 “최근 20일중 주가상승일수 15일이상” 요건을 삭제
  - 일시적 주가조정이 있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
- 1차 예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예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일시적 주가조정을 통하여 “예고 2일 연속”을 우회함으로써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투자주의종목 지정예외 근거 마련

(3조 5항 : 2008/11/13 개정, 12/1 시행)

-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IV. 증권업협회 규정

###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 변경

(2조, 7조, 12조 : 2008/3/25 개정, 3/26 시행)

- 종래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으로 금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함

대표주관계약의 체결시한 폐지

(3조 2항 : 2008/3/25 개정, 3/26 시행)

-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에 앞서 3개월 전에 증권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등록전문인력 변경 사항의 협회 보고 방법 변경

(4-37조 : 2008/3/5 개정, 3/10 시행)

- 등록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협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최종 학력”, “지점 주소” 및 “호주성명 및 관계” 기재란을 삭제

(별지 9호·9호의2·10호·17호 : 2008/3/5 개정, 3/10 시행)

- “최종 학력” 및 “지점 주소” 기재란을 삭제

- 전문인력등록신청서, 전문인력등록(신고)원부 및 비등록전문인력신고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성명 및 관계” 기재란을 삭제
- 금융자산관리사 신원확인서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 변경(2008/3/5 개정, 3/10 시행)

- 종래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으로 “금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함

□ 주식선물제도의 설명서 반영 (별표3 : 2008/5/6 개정 · 시행)

- 주식선물의 제도개요 추가
  - 대상자산, 결제월, 최종거래일, 거래개시일, 거래단위, 거래시간, 결제 등
- 주식선물의 손익계산 사례 예시 추가
  - 매매체결일 당일의 일일정산
  - 매매체결일 이후의 일일정산
  - 최종거래일의 최종결제차금

□ 투자일임 관련 규정 개정 (2-26조 3항 : 2008/6/20 개정, 7/1 시행)

- 투자일임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을 허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36조의2 4항 5호) 개정 사항 반영

□ 주식선물제도의 도입 (2-26조 3항 : 2008/6/20 개정, 7/1 시행)

- 주식선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분석 자료의 정의, 조사분석담당자의 매매제한 및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를 하여야 할 범위에 주식선물을 추가
  - 거래소의 「선물시장 업무규정」(21의2~21의7) 개정 사항 반영

- 조사분석의 일반원칙 강화 (1-13조 : 2008/12/11 개정, 12/16 시행)
  - 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가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

### 3. 증권회사의 약관운영에 관한 규칙

- 약관변경시 신문 광고의무 폐지  
(별표10 14조 : 2008/3/25 개정, 3/26 시행)
  - 종래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 변경시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일간신문에 광고하여야 했으나,
  -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규제부담 완화차원에서 신문 광고의무를 폐지함
    - 다만, 약관 변경내용 통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명시
- 약관의 적용범위 확대 (1조 1항 4호 : 2008/5/6 개정 ·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선물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약관 적용범위에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추가
- 수탁거부 사유 추가 (5조 1항 9호 : 2008/5/6 개정 ·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4조에서 금지하는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수탁거부사유에 추가

□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별표6 8조·19조 : 2008/10/16 개정, 10/20 시행)

-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 요건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
-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의 우선적용 명시

□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약관

(별표8 2조 17호·5조 10항·9조 7항·12조·13조 : 2008/10/16 개정, 10/20 시행)

-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산정방법 변경
  - 종래 증권회사가 산정토록 하고 있던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방식을 당사자간 합의하는 방법으로 변경
- 매입유가증권 발행자가 지급불능 등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 매수자의 선택권 확대
  - 매입유가증권 발행인이 파산선고 등 실질적 지급불능상태에 처하는 경우, 매입유가증권 교체 외에 매수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가치를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0”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 삭제
  - 종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매입유가증권 및 증거금유가증권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환매일 조기 도래시 정산금 산정방법 등 개선
  - 정산금 지급기한을 조기도래한 환매일의 익영업일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 산정을 통보받은 날의 익영업일로 연장
  - 시장가치를 통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가를 통한 정산금 산정시에도 거래 예상비용을 가산·공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가증권 교부의무 불이행시 미교부된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현금증거금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과세제도 변경 등의 경우 환매일 변경 근거 신설
  - 과세제도 변경 등으로 당초 약정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 일방에게 심히 부당한 경우 환매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4. 채권 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수익률 보고대상 국고채권에 대한 단서 추가

(7조 2항 1호 : 2008/5/15 개정, 5/26 시행)

- 국고채권(3년, 5년, 10년, 2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일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 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 5.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 예비지정제도 신설 (10조의2 : 2008/6/20 개정 · 시행)

-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지정제도를 도입
- 세부사항
  - 한국테크노파크협회의 추천을 예비지정요건으로 함
    - \* 한국테크노파크협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
  - 신청회사는 한국테크노파크협회를 통하여 협회에 예비지정 신청
  - 예비지정법인이 2년 이내에 프리보드에 진입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지원에 부적합한 경우 예비지정 해제

-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14조 3호, 15조 : 2008/6/20 개정 · 시행)

- 테크노파크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 개선  
(7조 1항 8호·13호, 45조 2항 2호 : 2008/6/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하게 정비
  -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 요건을 2년간 6회 이상으로 완화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즉시 지정해제 가능
  - 투자유의사항 공시도 불성실공시 2년간 4회 이상으로 완화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41조 3항 4호 : 2008/6/20 개정·시행)

- 지정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예외로 인정

## 6.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

(3조, 8조 등 : 2008/8/25 제정, 9/1 시행)

-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함
- 금융기관 해외진출 절차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일부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6조 6항, 7조 11항, 8조 8항 등 : 2008/8/25 제정, 9/1 시행)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신고수리 등 일부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게 위탁하고,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

##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10년국채인수도 참가자 (23조의42 : 2008/4/29 개정, 4/30 시행)

— 선물시장의 결제회원

□ 인수도자료의 통지 (23조의43 : 2008/4/29 개정, 4/30 시행)

— 거래소는 10년국채선물의 최종거래일에 인수도참가자간 인수도수량을 배정한 후 인수도참가자별 최종결제수량 및 인수도참가자별 국채종목별 인수도차감수량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인수도참가자별 최종결제수량 : 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

□ 인수도 방법 및 불이행의 통지

(23조의44~45 : 2008/4/29 개정, 4/30 시행)

— 국채의 인도자인 인수도참가자는 인수도 시한까지 인도대상국채를 자기의 예탁계좌로 예탁하여야 함

•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국채의 처분 제한 가능

— 인수도참가자 및 거래소가 인도청구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즉시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인도해야 함

• 인수도참가자 인도청구 통지시 : 거래소 예탁계좌로 계좌대체

• 거래소의 인수도참가자로의 인도청구 통지시 : 거래소 예탁계좌에서 인수도참가자의 예탁계좌로 계좌대체

— 참가자가 인수도시한까지 인수도 불이행시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10년국채선물 인수도수수료 (별표 : 2008/4/29 개정, 4/30 시행)

— 요율 : 최종거래수량에 대해 부과

자기거래	위탁거래
1계약당 332원	1계약당 380원

— 징수대상 : 인수도참가자

— 징수시기 : 증권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함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 인하

(별표 : 2008/4/29 개정, 5/1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을 20% 인하함

구 분	기 존	개 정
주 식	0.2755/10,000	0.2204/10,000
채 권	0.021375/10,000	0.0171/10,000
상장지수 간접투자증권	0.2755/10,000	0.2204/10,000

- 주식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
- 채권 : 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수수료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93년 이후 계속면제

□ 인하기간 (부칙 1조~2조 : 2008/4/29 개정, 5/1 시행)

— 인하기간은 2008년 5월 1일 매매분부터 7월 31일 매매분까지임

- 다만, 수수료 징수요율 인하기간 중에 본 건의 증권회사수수료에 대하여 시장효율화위원의 수수료 변경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인하기간 이후에도 변경 수수료를 계속 적용함

##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 10년국채인수도 관련 규정 신설

(17조 1항 3호, 18조 1항 1호·2항 1호, 19조 2항 2호 : 2008/4/30 개정, 5/2 시행)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에 10년국채인수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21조의2 : 2008/3/28 개정, 4/1 시행)

- “외화증권” 및 “외화” 중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것을 담보대상 유가증권 범위에 추가

### □ 외화증권 및 외화의 담보 제공 방법

(21조의3 3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예탁결제원 명의 외화증권계좌에 외화증권을 납부하거나 외화예금계정에 외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공

### □ 외화증권 및 외화 담보물의 관리

(21조의4 2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담보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외화증권 및 외화는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되,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인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외화증권인 담보물 처분을 제한

□ 운용대상 담보물의 범위 확대

(21조의5 : 2008/3/28 개정, 4/1 시행)

— “외화”를 운용대상 담보물 범위에 추가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외화증권 및 외화의 계좌 등 대체·이체 (26조의2 1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여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다음의 계좌 등으로의 대체·이체 청구가 가능

- (외화증권) 외화증권계좌 / (외화) 외화예금계정

□ 대차거래 담보대상의 범위 확대

(21조의2 1호 : 2008/11/13 개정, 11/14 시행)

— 예금을 대차거래 담보대상에 추가

□ 예금의 담보 제공방법 신설

(21조의3 3항 : 2008/11/13 개정, 11/14 시행)

— 차입자는 담보권자와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예금담보를 제공

- 이 경우 예금담보에 대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승낙을 얻도록 함

####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담보물중 외화증권 및 외화의 평가방법 신설

(9조의2 3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 및 외화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전 영업일에 최종 고시한 환율에 따라 담보평가방법 등을 적용함

□ 담보물인 외화증권의 교환청구 근거 및 교환시기 신설

(9조의4 1항 4호, 2항 1호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 담보의 경우 유가증권 담보의 교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채권이자 등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외화담보 운용이자의 지급

(9조의5 1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담보의 경우 현금담보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용하고 매월 운용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차입자에게 지급함

□ 외화증권담보 및 외화담보의 처분방법 신설

(9조의8 1항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담보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담보물 순으로 외국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 등을 통해 처분함
- 외화담보의 경우 예탁원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로 환전함

□ 외화증권 및 외화 중 담보대상 범위 설정

(별표1 : 2008/4/4 개정, 4/7 시행)

- 외화증권의 경우 미국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을, 외화의 경우 미국달러화만을 담보대상으로 인정

- 예금의 담보대상 범위 설정 (별표1 : 2008/11/17 개정 · 시행)
  - 대차거래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국내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차입자 명의 정기예금”으로 한정

- 예금담보의 관리 및 처분방법 신설  
(9조의2 4항, 9조의8 1항 2호의2 : 2008/11/17 개정 · 시행)
  -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담보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예금금융기관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함
  - 채무불이행시 예금담보는 해당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 분할할 수 없는 예금담보의 특성을 감안, 대이행한 금액 등으로 제한되는 담보물의 처분 범위에 대한 예외를 명시

- 담보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 제한  
(9조의4 3항 : 2008/11/17 개정 · 시행)
  - 담보교환 사유에 해당하는 담보대상유가증권등의 담보 제공을 담보권자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증권대차거래 관련 담보비율 상향 조정  
(9조의3 1항, 부칙 2조 : 2008/10/17 개정, 10/20 시행)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증권대차거래 불이행 발생 및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방안조치(2008/9/24)에 따라, 증권대차 관련 담보비율을 “100%이상 110%이내”에서 “100%이상 130%이내”로 상향 조정
  - 개정 담보비율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 대차거래에 대해서 적용함
    -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담보비율을 적용

##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수탁계약 해지사유의 구체화 (18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위탁회사의 폐업·휴업·파산 또는 수수료의 장기체납 등 수탁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함
  
- 수탁계약 해지 시의 유치권 행사사유 명시  
(19조 1항 : 2008/3/11 개정, 4/1 시행)
  - 수탁계약 해지 시 수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위탁회사의 관련 장부 및 문서 등을 인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유치권의 당연한 행사이나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위해 명시
  
- 수수료 감면사유 해소 시의 기본수수료 징수시기 조정  
(21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유(회사정리절차 개시 등)가 해소된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기본수수료를 즉시 징수하도록 함
  
- 사고증권 관련 업무처리절차 정비  
(32조 3항 : 2008/3/11 개정, 4/1 시행)
  - 사고신고된 증권에 대해 명의개서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과 사고신고인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사항 제공 시에는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가능성을 배제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43조 : 2008/3/11 개정, 4/1 시행)

- 주주 등이 자기소유주식에 관해서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 주주 명부의 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예탁원이 담당하도록 함
  -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당해 청구를 위탁회사로 이송하여 위탁회사가 직접 처리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절차 규정

(43조의3 : 2008/3/11 개정, 4/1 시행)

- 소수주주가 법원의 판결을 얻은 경우 직접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하여, 소수주주권의 보호를 도모함
  -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소수주주로 하여금 예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수수료 발생을 방지

□ 인감관리 업무개선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1조 1항 9호, 10조 1항, 3조~40조, 80조 등 : 2008/3/11 개정, 4/1 시행)

- 인감표를 대신하여 인감을 직접 등록하도록 하고, 인감의 전자적 관리근거를 규정에 명시함

## 6.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 가산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7조의2 : 2008/4/1 개정·시행)

- 가산료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질권자 단독의 질권 말소 청구시 첨부서류 추가

(9조 1항 2호 다목 : 2008/4/1 개정·시행)

- 민사 유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질권자 단독의 질권말소청구시 상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함

□ 인감등록제도 개선사항 반영

(11조의2 2항, 12조 : 2008/4/1 개정·시행)

- 주주의 대행업무 청구시 인감표 제출 대신 인감을 등록하도록 하고, 증권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간 필요시 인감표 대신 인감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일정 협의시 징구서류 규정

(13조의2 : 2008/4/1 개정·시행)

- 주주총회 증빙서류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문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징구하도록 함

□ 전환청구로 인한 주식발행시 발행원인 증빙서류 추가

(16조 3호 가목 : 2008/4/1 개정·시행)

-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시 증권예탁결제원 소정의 전환청구서 또는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징구하도록 함

□ 배당소득 감면대상 주식의 배정규정 삭제

(24조 : 2008/4/1 개정·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규정이 적용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관련규정 삭제

(26조~31조 : 2008/4/1 개정·시행)

-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행업무가 동 규정의 대상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

## 7.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

□ 결제대용증 발행시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한 매도대금 상당액 징수

(11조 2항, 4항 : 2007/12/27 개정, 2008/1/21 시행)

- 결제대금이 납부 포지션인 매도 결제참가자가 결제대용증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대금 상당액을 징수함
  - 차감 후 대금결제 포지션이 '수령'인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하여는 매도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유예하고, '납부'인 매도 결제참가자에 대하여는 매도대금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함

## 8. 선물거래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 대용필요액의 통지·관리에 관한 관련사항 삭제

(2조 1항 4호, 5조 2호, 14조, 15조, 24조 : 2008/3/28 개정, 4/1 시행)

- 거래소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대용필요액 통지가 중단(예정)됨에 따라 대용필요액의 정의·통지 및 관리, 대용필요액에 따른 인출제한 등 관련사항을 삭제

\* 대용필요액 : 선물거래의 증거금필요액에서 예탁되어 있는 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거래소 또는 회원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한 금액

□ 대용증권의 인출 및 처분에 관한 거래소의 사전 확인

(25조 2항, 26조 2항, 28조 2항 : 2008/3/28 개정, 4/1 시행)

- 회원 또는 위탁자가 대용증권의 인출을 청구하거나 거래소 또는 회원이 대용증권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

##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 등록말소에 관한 위임근거의 마련 (별지 : 2008/3/3 개정 · 시행)

- KSD명의 등록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수령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 처리를 위한 등록말소업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본 자본시장 제도동향은 자본시장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본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